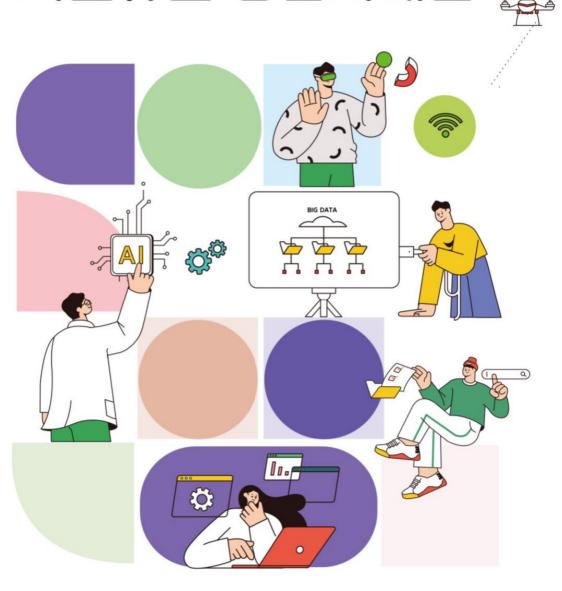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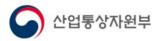
2024

기술유출 상담사례집









제1장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상담사례

1.	재직자	. 3
	(1) 임직원 개인 이메일 사용 관련 대응 사례 ·······	
	(2) 재택근무 시 기술유출 상담 사례	
	(3)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모색 사례	
	(4) 내부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비밀관리성 인정범위 사례	
	(5) 재직자 대상 관리적 보안 방안 사례	15
2.	퇴직예정자 ····	21
	(1) 퇴직예정자에 대한 자료 회수와 전직금지 요청 사례	21
	(2) 퇴직 및 전직 시 퇴사자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응방법 문의 사례	
	(3)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금지약정 체결 문의 사례	27
	(4) 퇴직예정자의 저장매체 관리방법 문의 사례	29
3.	퇴직자	31
	(1) 퇴직자의 해외이직에 대한 대응 방안	31
	(2) 퇴직자의 경쟁사 이직 후 동종 업무 수행 여부 확인 방안 사례	
	(3) 퇴직자의 동종업체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	36
	(4) 퇴직자의 거래처 정보 유출 사례	38
	(5) 퇴직자에 대한 소스코드 반납 요청 사례	40
	(6) 퇴직자의 경쟁업체 전직 대응방안 사례	
	(7) 계약불이행 및 직원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사례	46

	IOT!
ᇇ	
1	
-	_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상담사례

1. 공동연구개발 과정 51 (1) 해외 공동연구개발 시 유의사항(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해당 시) ··· 51 (2) 공동연구개발 진행 전 기술유출 대비 방안 문의 사례(계약 체결 관련) ··· 54 (3)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사례 ···································							
2. 기타 협력과정 63 (1)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대응 사례 63 (2)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사례 67 (3)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대비 방안 문의 사례(NDA체결 관련) 70 (4) 외주업체의 기술 탈취 사례 72 (5) 유지보수 업체의 기술유출 사례 75 (6) 기술자문을 빙자한 기술유출 사례 77 (7)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사례 80 (8) 기술이전과정에서의 기술탈취 사례 82							
제3장 기술보호 관련 서식							
1. 내부직원 보안서약서89(1) 입사자용 보안서약서(국문)89(2) 입사자용 보안서약서(영문)94(3) 재직자용 보안서약서(국문)99(4) 재직자용 보안서약서(영문)104							

2024 기술유출 상담사례집

	(5) 퇴사자용 보안서약서(국문) 109	9
	(6) 퇴사자용 보안서약서(영문) 113	
	(7) 영업비밀 자료 반납 확인서	
	(8) 프로젝트 참여자용 보안서약서119	
2.	외부인 보안서약서122	2
	(1) 공동프로젝트 수행 시 보안서약서 122	
	(2) 용역·협력업체용 보안서약서 124	1
	(3) 퇴사자를 채용한 회사에 대한 내용증명 서식 127	
3.	영업비밀보호 규정 128	3
	(1) 영업비밀 관리규정 128	3
4.	기타 보안서식 144	1
	(1) 비밀유지계약서(국문) 144	
	(2) 비밀유지계약서(영문)	
	(3) 비밀자료 제공·수령 확인서 ·······162	
제4	장 산업기술보호지원제도 FAQ	
1.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 165	5
2.	국가핵심기술 170)
3.	산업기술 확인제도 173	3
	산업보안 교육 176	
	기타178	
J.	· -	,



2024 기술유출 상담사례집

내부자에 의한 ■ 기술유출 상담사례 ■

- 1. 재직자 편
- 2. 퇴직예정자 편
- 3. 퇴직자 편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상담사례 🖳



재직자 편 1.

(1) 임직원 개인 이메일 사용 관련 대응 사례

A사는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영업책임자였던 K씨가 퇴사하면서 유사 제조업체인 D사로 이직하였습니다. 기술유출이 걱정되어 K씨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K씨가 거래처 리스트, 도면, 영업자료 등을 개인 이메일로 발송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며칠 뒤, 기존 A사 거래처에게 K씨가 D사의 이름을 대며 연락이 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곧장 D사에 해당 자료 활용 금지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K씨와 D사는 해당 자료들이 일반 영업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또, 임직원들의 개인 이메일 사용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자문

현재 상황은 영업비밀 침해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일부 징후라고 볼만한 점이 존재하는 경우로, 아래 증거확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좀 더 영업비밀 침해가 확실해지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증거확보) ① 개인 이메일 발송 사실, 첨부된 자료와 내용을 화면 캡쳐, 사진 촬영, 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증거 확보하고, ② 거래처로부터 K씨가 D사의 이름으로 어떤 내용의 연락이 왔으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였는지에 대하여 사실확인서, 녹취 등을 통해 증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모니터링) K씨와 D사가 A사 영업자료 활용, 추가적인 거래 연락 등의 사실이 없는지 모니터링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송제기) D사에서 일반 영업 내용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제적으로 D사를 압박하고 싶다면, K씨를 상대로 전직 및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D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등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의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취할 수는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증거 확보 없이는 승소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로, 임직원의 개인 이메일 사용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개인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업무 관련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회사의 사전 승인하에 사용 허용하는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영업비밀관리규정, 직원과 작성하는 비밀유지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등의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추후 영업비밀 유출 분쟁 발생 시 고의, 악의성 입증, 법상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 비밀로 관리했을 것을 요하는 영업비밀성 입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메일 모니터링의 절차, 요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영업비밀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직원들로부터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는 이메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도 모니터링의 범위는 비위 또는 범죄사실 확인을 위해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하는 행위로 형사상 전자기록등 내용탐지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 재직자 편

(2) 재택근무 시 기술유출 상담 사례

S사는 인터넷 정보통신기기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DLP, DRM 등 기본적인 보안을위한 프로그램은 설치되어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기술보호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재택근무 도입 시 직원들에게 추가로 받아야 하는서약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DRM 및 DLP 외 다른 보안대책을 모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DRM과 DLP 프로그램은 영업비밀이 귀사의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만약 이 프로그램들이 무력화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손상시켜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인가를 득하는 방법등)에 종국적으로 직원의 각 로컬 PC 등에 저장된 정보가 반출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가급적 S사의 중앙 서버 내지 집중화된 스토리지 등에만 저장되도록 하여 로컬 PC 저장 자체를 막거나 가급적 최소화함으로써 DRM 또는 DLP가 무력화되는 경우에도 유출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서중앙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면 보다 강력한 보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히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 임직원 개인 로컬 PC에서의 작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작업을 가급적 S사 업무용 PC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유출방지 및 사고발생 시의 증거수집 등을 위하여 더욱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로컬 PC에서 업무를 할때에는 가상 머신(Virtual Machine) 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또는 원격접속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실제 S사 업무용 PC 상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적어도 S사에서 각 직원들에게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업무용 PC를 지급하고(랩탑 등의 방식) 그 사용을 요구함으로써, 직원들이 개인자산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DRM이나 DLP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있는 기능이기는 하나, 귀사 자료의 반출입 등이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거나 적어도 로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만약 업무용 PC가 지급된다면, 해당 업무용 PC의 HDD 등 저장장치를 주기적(6개월 또는 1년)으로 교체하여 보관함으로써 직원이 포맷 등을 통하여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나, 이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S사의 사정에 맞추어 도입 여부를 적절히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S사의 직원들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계약서 내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재택근무 시행에 비밀유지의무를 재확인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계약서 내지 서약서를 징구한다면 추후 사고 발생 시 직원의 의무위반을확인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택근무를 위하여 반출된 영업비밀을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재택근무지를 넘어 다시 이전하는 경우 등재택근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비밀유지의무 위반에해당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직원의 사전교육이 필요하고, 특히 재택근무상황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직원에게 이 같은상황을 인식시키고 재택근무 중 영업비밀 등 회사자료들에 대한 촬영,복제·복사를 금지하고 제3자에게 유출·노출되지 않도록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안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 상황에서는 작업 자체가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PC 등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같은 포렌식 등 조사에 대비하여, 직원으로부터 사고 발생 시 조사절차의 진행에 대한 동의서를 재택근무 시행전 징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업무용 PC를 별도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직원 소유의 개인 PC 등에 대한 조사 동의를 징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 과정에서는 직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포렌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위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도록, 정보감사에 대한 동의를 징구받는 과정에서는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조사를 위한 활용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가(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기위한 개인정보 등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까지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DRM : 문서 등의 외부 반출시 허락된 인가자 외에는 파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인가를 득한 뒤에만 비로소 파일이 열람가능한 상태로 송부되는 프로그램

** DLP : 파일의 외부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하여 외부저장장치 또는 이메일 첨부 등의 방법으로 반출시 승인을 득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1. 재직자 편

(3)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 모색 사례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원 B씨의 이직 징후와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내부 자료 유출정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씨의 사내 PC와 이메일, 사내 메신저를 모니터링 하고자 합니다. A사가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모니터링 해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법률자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 메신저 등을 모니터링하는 행위는 아래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1) 민사적 책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 메신저 등 전자통신을 감시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형사적 책임

근로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감청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 1항 제1호, 제 3조 1항). 또한, 이메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추가로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의 대부분이 비밀번호 등 비밀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든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이메일을 열람하는 경우 형법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6조 2항). 뿐만 아니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72조 2호).

정리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 등 전자통신수단 및 PC, 노트북을 무단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모니터링한 정보를 열람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의 적법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당사자들로부터 합리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판례(2003. 8. 22. 선고 2003도3344 판결의 1심 및 2심) 역시

"… 이메일 열람이 통신비밀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동의하였다고 강하게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는 이메일 열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대한 명시적인 처분의사를 포함해야 한다.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의라고 함은 포괄적 동의가 아닌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사실, 모니터링한 정보들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방법, 열람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동의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외에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업무시간 중 송수신되는 이메일, 메신저 메시지는 업무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고지하거나, 회사의 컴퓨터, 통신회선 등을 포함한 통신시설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모니터링'의 적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B씨로부터 동의를 받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경우 B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시

- ① B씨가 A사의 내부 자료를 유출한다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긴급히 이를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객관적으로도 인정되고.
- ② B씨가 입사 당시 A사 소유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들을 모두 A사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며,
- ③ B씨의 컴퓨터나 이메일, 메신저 등에서 위와 같은 자료유출의 정황이 확인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 ④ A사가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고, B씨의 자료 유출행위에 의심이 가는 특정한 단어 또는 특정한 용량 이상의 파일만을 모니터링 하는 등 모니터링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경우에 따라 A사의 모니터링은 B씨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참고). 다만 이와 같은 동의 없는 조사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판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위 요건들에 대하여도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긴박하고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B씨의 동의를 거쳐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0

1. 재직자 편

(4) 내부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비밀관리성 인정범위 사례

회사 직원이 회사 내부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서류를 외부에 유출, 그 문서에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영업비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다만 보안등급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외부에서 볼 때 회사의 문서임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직원은 문서에 회사의 마크나 보안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회사는 결국 징계 절차를 거쳐 담당 직원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담당 정보는 그 부서 직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고 직원들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등이 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의 경우, 영업비밀보호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고, 보안에 관한 교육도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는 영업비밀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었고 유출된 고객사 양식의 해당 영업문서와 관련해서도 비밀관리성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회사는 영업비밀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었고, 유출된 고객사 양식의 해당 영업문서와 관련해서도 역시 비밀관리성으로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영업비밀관리성에 대한 분쟁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

고객사의 양식에 따른 문서를 작성할 때 고객사와 당해 문서의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영업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 있습니다. 또한, 문서 내부의 정보가 실질적인 비밀에 해당한다면 문서 내부의 특정 정보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밀 표지를 표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혼자서 보안 관련 업무를 모두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하고, 그러한 점에 대해 회의록 등에 기록을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비밀관리유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비밀관리성을 인정받기 위한 주요행위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관리성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참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 여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판결 참조)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 ①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
- ②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 또는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
- ③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 하였는지 여부
- ④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 ⑤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 ⑥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의 정도
- ⑦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 ⑧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비밀관리성 인정 관련 최근 판례

-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0노3993 판결
 - 사 례 한편, 피해자 회사는 중개 물건에 관한 소유자의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 중개물건의 위치, 보증금·임대료 등 임대현황, 매도의뢰 가격, 중개진행 상황, 건물의 수익성 등의 정보를 내부 전산시스템 WCD로 관리하면서 전산시스템에 대한 마스터 관리자를 두는 한편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약정서(그 비밀유지 약정서에는 고객이 아닌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전 허가를 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를 작성·교부받아 물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또한 회사 내 IP로만 위 전산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게 하고 그 검색 및 인쇄 이력이 저장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연락처등 핵심 정보에 대하여는 출력조차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두었다(증거기록 제2권제166면).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비밀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부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한편 위 법률 이전에 시행되던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상당한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될 것(비밀관리성)을 요구하고 있었고, 여기서 '상당한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2024 기술유출 상담사례집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그 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개정을 통하여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이 다소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비밀관리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1. 재직자 편

(5) 재직자 대상 관리적 보안 방안 사례

Q 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적 보안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입사 및 퇴사시 받는 서류

- (입사 시) 영업비밀관리규정, 비밀유지서약서 또는 비밀유지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예 시 : "회사 PC 또는 노트북, 개인 PC 또는 노트북, 다른 USB 등 외부저장매체와 이메일, 클라우드, SNS 등에 보관된 회사의 자료들을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회사 업무를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포렌식 절차 등 조사에 대비하여 직원으로 부터 사고 발생 시 조사절차의 진행에 대한 동의서 받을 필요성이 있습 니다.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메일 모니터링의 절차, 요건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영업비밀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직원들로부터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서 받 아둘 필요성 존재합니다. 다만,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도 모니터링의 범위 는 비위 또는 범죄사실 확인을 위해 최소한으로 하여야 합니다.

- (퇴사 시) 퇴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① 자료의 반환 및 전부 폐기 요구,

- ② 관련 절차 이행, ③ 절차 이행 후 문제되는 자료 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예 시 : "회사 PC 또는 노트북, 개인 PC 또는 노트북, 다른 USB 등 외부저장매체와 이메일, 클라우드, SNS 등에 회사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퇴사 전 비밀유지서약, 전직금지약정 등을 정구받을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비밀유지서약 및 전직금지약정의 서명을 거부할 경우,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일정한 기간 동안 경쟁사등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길 필요성 있습니다. 고지 과정에서 회사 직원동석 또는 녹음, 녹화 등으로 근거를 상호협의하에 남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2) 회사보안솔루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경우, 필요한 절차

(2-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59조 1호, 제72조 2호)

(2-2) 모니터링 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

당사자들로부터 합리적이고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동의라고 함은 포괄적 동의가 아닌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는 사실, 모니터링한 정보들 열람 시 열람목적, 열람 방법, 열람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동의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업무시간 중 송수신되는 이메일, 메신저 메시지는 업무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고지하거나, 회사의 컴퓨터, 통신회선 등을 포함한 통신시설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모니터링'의

적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데이터 유출 시 법률적 대응 절차

(3-1) 민사적 대응

- ①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1조)
- ②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 산업기술보호법을 근거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 ③ 손해배상청구 소송
- ④ 만약 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면 그 직원을 상대로 영업비밀침해 금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경업금지 구할 수 있음(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
- ⑤ 전직금지가처분

천고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전직금지약정이 있으면 바람직하나,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의 청구가 가능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고, A씨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귀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직 금지 또는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참고).

다만,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법 규정만을 근거로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2. 11. 12.자 2002라313 결정 참고), A씨가 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A씨의 경쟁사 이직에 대비하여 귀사의 자료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에 대한 근거들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밀관리성이므로, I사가 해당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2) 형사적 대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범 위반 또는 업무상배임 등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 진행

4) 회사PC에 개인적인 메일/메신저 모니터링 해도 문제 없는지 여부

(4-1) 민사적 책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메일, 메신저 등 전자통신을 감시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2) 형사적 책임

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

근로자의 메일, 메신저 등을 무단으로 감청하는 것은 불법적인 전기 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 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 16조 1항 제1호, 제 3조 1항).

②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메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것은 정 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③ 형법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해당 가능성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의 대부분이 비밀번호 등 비밀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자가 어떤 식으로든 비밀번호 등을 알아 내어 이메일을 열람하는 경우 형법상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6조 2항)

④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모니터링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 보보호법 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호, 제 72조 2호)

5) 동의없는 모니터링이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될 가능성은 적음

동의를 받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시

- ① 직원 A씨가 귀사의 내부 자료를 유출한다는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긴급히 이를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객관적으로도 인정되고,
- ② A씨가 입사 당시 귀사 소유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들을 모두 귀사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며.
- ③ A씨의 컴퓨터나 이메일, 메신저 등에서 위와 같은 자료유출의 정황이 확인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며,
- ④ 귀사가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포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고, A씨의 자료유출행위에 의심이 가는 특정한 단어 또는 특정한 용량 이상의 파일만을 모니터링 하는 등 모니터링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다면, 경우에 따라 귀사의 모니터링은 A씨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음(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참고).

다만 이와 같은 동의 없는 조사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판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위 요건들에 대하여도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긴박하고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직원의 동의를 거쳐 모니터링을 수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

6) 감사 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감사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사전동의와 관련 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감사는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동의없는 모니터링 등 법령에 저촉되는 방법 의 감사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 회사에서 지급한 pc는 회사업무용으로만 써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는데, 급박한 경우 사전고지 없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지, 퇴사한 사람이 사용한 pc의 경우 고지 없이 검색 등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지 없이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판례에서 말하는 요건들을 엄격하게 갖추었을 경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정당행위로 인정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고 여러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행위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급박한 경우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절차상으로도 위법하지 않도록 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에 동의없는 모니터링도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아보이고, 근거를 확실히하기 위해 계약서 등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도 그러한 내용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하던 직원이 퇴사를 한 경우라도, 그직원이 사용하던 PC에는 그 직원의 개인정보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퇴사한 직원이 사용하던 pc, 이메일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에 대한동의 등을 얻어 놓아야 합니다.

2. 퇴직예정자 편

(1) 퇴직예정자에 대한 자료 회수와 전직금지 요청 사례

I사에서 2년간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A씨는 경쟁사로 이직하겠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기업 대부분의 자료에 권한이 있었고, A씨의 자택에서 사내 클라우드 메일에 접속할 수 있어 I사의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A씨는 비밀유지서약서와 전직금지약정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며, 경쟁사로 이직한 뒤 I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것이 우려되어 A씨에게서 자료를 회수하고, 이후에 경쟁사에서 자료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법률자문

A씨가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선 A씨와의 퇴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자료의 반환 및 전부 폐기 요구, 관련 절차 이행, 절차 이행 후 자료의 반환 및 전부 폐기를 진행하여 문제되는 자료 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사실 확인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퇴직 과정에서 귀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A씨의 퇴사 전 비밀유지서약, 전직금지약정 등을 징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A씨가 비밀유지서약 및 전직금지약정의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A씨가 I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A씨는 일정한 기간 동안 경쟁사 등에 취업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 내용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을 위와 같은 고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A씨로부터 징구받는 것이나,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에는 적어도 A씨에 대한 위 고지 및 경고과정에서 다른 직원을 동석하게 함으로써

추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A씨에 대한 위 과정들을 녹음 또는 녹화 등의 방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A씨가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I사는 A씨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은 전직금지약정이 있으면 바람직하나,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고, A씨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I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직 금지 또는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통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참고).

다만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의 헌법상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위 법 규정만을 근거로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서울고등법원 2002. 11. 12.자 2002라313 결정 참고), A씨가 I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I사는 A씨의 경쟁사 이직에 대비하여 I사의 자료가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점에 대한근거들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비밀관리성이므로, I사가 해당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가 보유한 I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반환 및 폐기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같은 요청사실을 추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문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 등을 내용증명의 형태로 A씨에게 발송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이 어렵다면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전달하고 해당 이메일을 저장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가 영업비밀을 반환 및 폐기하지 않고 이를 보유한 채 경쟁사로 이직할 경우 A씨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가능한 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퇴직예정자 편

(2) 퇴직 및 전직 시 퇴사자 본인이 할 수 있는 대응방법 문의 사례

A씨는 P사의 기술개발 파트장으로 8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사정으로 인해 P사에서의 근무가 어려워져 이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술개발 파트장으로 근무하였던 만큼 P사의 기술정보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에 비밀유지 등으로 인해 같은 분야의 이직이 어려울 것 같아 우려됩니다. 계속 한 분야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 퇴직 및 이직할 때 P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P사가 같은 계열의 전직 금지를 요구하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협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자문

P사 입사 및 근무 중 전직금지 등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통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 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근로자의 입사 시 및 근로 중에 전직금지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약서에 전직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전직금지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약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P사는 약정에 기하여 A씨에게 전직금지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전직금지 기간은 위 약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 82244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례는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전직금지 약정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3년을 초과하는 전직금지 기간이 인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입사 시 또는 재직 중 전직금지 등에 관한 약정이나 서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경우, P사는 약정에 기한 전직금지 등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직금지가처분 등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6.자 2002마4380 결정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는 P사가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약정에 기한 전직금지 등의 요구에 비하여는 회사의 입증부담이 비교적 크고, 그에 따라 만약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앞서 설명한 약정에 기한 전직금지 등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전직금지 기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A씨는 P사의 기술개발 파트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비교적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해당 직책을 8년이나 역임하였으므로, P사의 영업비밀보호등을 위한 전직금지 등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보입니다. 다만 평소 전직금지 등의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수령한 사정이 없거나, P사의 급여가 동종업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거나, P사에서 취급한 기술이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낮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전직금지 등의 기간을 비교적짧게 인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A씨가 P사와의 사이에 입사 또는 근무 중 전직금지 등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기간의 전직금지 등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퇴직 및 이직 시 P사에서 귀하에게 전직금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작정 거부하기보다는 적절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P사의 요구는 수용하되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A씨의 이직이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부정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A씨의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짧은 전직금지 등의 기간을 인정받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사정을 대략적으로라도 P사에 전달하고, 따라서 귀하에게 충분한 수준의 반대급부가 제공된다면 P사가 원하는 수준의 전직금지 등의 기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반대급부에 관하여는 명확한 판례가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일의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월 급여 약 5개월 분의 전직금지 대가를 수령한 근로자에 대하여 2년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5.1. 15. 선고 2014나2012674 판결), 월 급여 1개월 분 및 그 밖의 편의를 전직금지의 대가로 제공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1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8가단542980 판결), 월 급여 약 7~8개월 분의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9.10. 30. 선고 2018가합29286 판결). 전직금지의 대가를 겸하여 퇴직금으로 약 2년 분 급여 상당의 금액을 수령한 근로자에 대하여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0. 2. 선고2019가합10005 판결). 월 급여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6개월의 전직금지 기간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9. 17. 선고 2019가단92830 판결)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퇴직예정자 편

(3) 퇴직예정자에 대한 전직금지약정 체결 문의 사례

중소기업인 A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B씨가 퇴사를 결심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B씨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만큼 경쟁사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상당하여, 퇴사 전 전직금지 관련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A사는 B씨에게 어느 정도의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더하여, A사는 전직 금지 외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법률자문

연구·개발부서의 연구원 및 기술임원 등이 경쟁기업으로 옮겨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해 직원과 전직금지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을 맺을 때 주의할 점은 금지기간이 비밀의 정도, 시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장기간일 경우, 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어 약정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영업비밀의 가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재직 시 습득한 제반지식 및 기술을 이용해 경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경업금지기간과 지역, 대상 직종 등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퇴직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직금지의 제한은 그 제한기간, 지역, 직종의 범위 등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여퇴직자의 생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한편, 전직금지 시에는 계약상 금지기간 동안에 상당하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직금지약정서와 함께, 퇴직자에게 퇴직자 소유의 개인정보저장매체,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SNS 등에 저장된 회사의 자료들을 확인하고 이를 모두 폐기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이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요청서류 등)를 남기는 한편, 위와 같은 폐기요청에 따른 폐기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 PC 또는 노트북, 개인 PC 또는 노트북, 다른 USB 등 외부저장매체와 이메일, 클라우드, SNS 등에 회사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PC 또는 노트북, 개인 PC 또는 노트북, 다른 USB 등 외부저장매체와 이메일, 클라우드, SNS 등에 보관된 회사의 자료들을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회사 업무를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B씨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로 전직한 경우 이를 근거로 영업비밀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직예정자 편

(4) 퇴직예정자의 저장매체 관리방법 문의 사례

A사는 토목 관련 주요 연구과제를 담당하던 책임 연구원 B씨가 동종 사업 분야의 진출을 준비하는 업체에 이직한다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씨의 업무용 USB를 확인하였고, 모든 제품 기종의 개발소스/코드, 핵심연구개발 과제 자료들이 승인받지 않고 저장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A사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USB 반출 금지 규정 교육 및 징계조치 등을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법률자문

B씨로부터 개발 소스코드들과 핵심연구개발 과제들이 저장된 업무용 USB를 반환받고, 저장하게 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미리 고지한 징계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외 회사 PC 또는 노트북, 개인 PC 또는 노트북 및 다른 USB 등 외부 저장매체에도 위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 또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 PC 또는 노트북, 개인 PC 또는 노트북, 다른 USB 등 외부저장매체와 이메일, 클라우드, SNS 등에 개발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회사의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PC 또는 노트북, 개인 PC 또는 노트북, 다른 USB 등 외부저장매체와 이메일, 클라우드, SNS 등에 보관된 회사의 자료들을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거나 회사 업무를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확인서 또는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바탕으로 외부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들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B씨가 이직하려고 하는 기업과의 계약서를 확인하여 동종제품 생산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B씨의 퇴사 전 B씨와의 경업금지약정(또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해두는 것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전직금지의 제한은 그 제한기간, 지역, 직종의 범위 등을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여 퇴직자의 생계에 지나친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직금지 시에는 계약상 금지기간 동안에 상당하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퇴직자 편

(1) 퇴직자의 해외이직에 대한 대응 방안

D사는 전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으로, 연구직으로 8년간 근무하던 직원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두 달 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 시 비밀유지계약서 및 전직금지 약정서를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가 중국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이직을 계획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 걱정이 됩니다. A씨의 본사 연구경력이 긴만큼 중국기업으로 이직하였을 때 D사의 기술이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A씨의 이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시 이직 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또 다른 직원들이 해외이직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자문

A씨가 D사 자료 또는 영업비밀 등을 반출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에서 D사가 A씨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씨가 D사 자료 또는 영업비밀 등을 반출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D사는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또는 소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D사는 ① A씨가 퇴직 시 작성한 비밀유지계약서 및 전직금지 약정서에 기하여 A씨의 중국기업 이직이 위 약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일정한 기간 전직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 ②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A씨의 중국기업 이직이 D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일정한 기간 전직의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이미 이직을 한 경우에는, A씨가 이직한 기업을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D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 A씨가 D사 자료 또는 영업비밀 등을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의 대응방법에 더하여 A씨 및 A씨가 이직한 기업을 상대로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A씨가 유출한 D사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 산업기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하여 D사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가 인용되거나 또는 D사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의 침해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A씨의 이직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A씨가 D사의 자료를 반출한 정황의 유무에 따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D사는 우선 A씨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 등의 과정을 거쳐 퇴직 전후 자료유출 정황을 먼저 확인하여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직원들의 추가적인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① 직원들과의 사이에 비밀유지계약 및 전직금지약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점검 및 보완
- ② 임직원 대상 기술유출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담은 영업비밀보호교육 실시
- ③ 직원들 중 해외 이직과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모니터링

강화(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등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및 비밀유지 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만약 D사의 기술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A씨가 D사의 신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지정되었다면 D사는 A씨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거나(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 제5항 제2호), A씨가 해외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제한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제1호)을 들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A씨의 출입국 정보를 제공받아 A씨의 해외 이직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A씨가 이미 2개월 전 D사를 퇴직한 이상 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문인력의 사후지정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귀사에 재직 중인 다른 직원들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지정신청을 통하여 해외 이직에 대한 사전모니터링 및 대비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3. 퇴직자 편

(2) 퇴직자의 경쟁사 이직 후 동종 업무 수행 여부 확인 방안 문의 사례

R사에서 5년간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최근 경쟁사 O사로 이직하였습니다. A씨가 퇴사 전 작성한 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O사에서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A씨는 전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 전직금지약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R사는 A씨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부서를 이동할지 알 수 없고, 현재 부서에도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옳은건지, A씨가 R사에서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자문

이 같은 경우 전직금지약정의 문언 기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약정서에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약정에 따라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약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경쟁업체로 이직하여동종업무를 수행'하여야만 약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A씨의주장이 맞지 않습니다.

다만 전직금지약정은 그 유효성이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고, 사용자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퇴사자의 퇴사 전 지위 및 퇴사의 경위, 전직금지의 대가 지급 여부,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공공의 이익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판결).

또한, 최근 경업금지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경우'를 제한 해석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924 판결). 따라서 경업금지의무만을 부과하는 약정에도 법원이 위와 같은 해석의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주로 '귀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등이 불명확하거나 A씨의 업무와 취급 자료가 귀사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때일 것입니다. 그 경우 법원은 R사가 A씨와 작성한 각서에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경우'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를 A씨가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등 R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해석하거나 전직금지약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A씨가 경쟁업체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R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 A씨의 주장이 타당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R사는 O사로 아래의 취지가 담긴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 ① A씨가 R사 영업비밀을 취급하였던 직원이다
- ② 최근 귀사로 이직하여 R사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
- ③ A씨의 직위와 담당 업무를 확인하여 양사가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

그러나 해당 공문 또는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O사에서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O사에서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한 뒤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의 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퇴직자 편

(3) 퇴직자의 동종업체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

각종 첨단 디지털 기기에 활용되는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는 A사에서 고객사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던 3명의 직원이 퇴사하여 동종업체인 B사로 이직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A사의 기술력, 프로세스, 데이터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을 통해 기밀사항, 현황 등 기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보안 사항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으며, 퇴사 후 1년간 동종 업체에 이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으나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법률자문

해당 사건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전직만 한 경우

퇴직한 직원들이 기술유출을 하진 않았지만, 전직금지약정을 어기고 경쟁업체로 이직만 한 상황이라도 전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영업비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A사는 퇴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전직금지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한편,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기술유출 우려가 있는 이상,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 ···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판결).

더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B사로 이직한 상황에서 A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퇴직한 직원들과 B사를 상대로 직원들이 A사의 영업비밀을 지득하고 있고, 그들이 지득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사용한다면 A사의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과 B사가 공개 혹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영업비밀을 분명히 인식하게 하고,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이 영업비밀 침해가 된다는 점에 대하여 미리 경고할 수 있습니다.

2) 전직 후 기술유출까지 가담한 경우

추후 퇴직한 직원들의 영법비밀 유출 정황을 발견하였다면, A사는 직원들과 B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혹은 산업기술보호법을 근거로 한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금지청구와 함께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등을 원인으로 한 형사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이 경우, B사를 상대로도 위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의 양벌규정을 통한 형사고소가가능하며, B사가 직원들의 기술유출을 교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 B사의대표자 또는 위 교사자 등을 상대로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37

3. 퇴직자 편

(4) 퇴직자의 거래처 정보 유출 사례

사무용기기를 납품하는 기업인 A사는 1년 전 B씨를 고용하여 기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정상 단독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워져, 거래처 정보 등을 포함한 모든 기업 정보를 B씨와 공유하였습니다. B씨는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고 이후 A사의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거래처 중 일부로부터 B씨가 물건 공급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A사는 B씨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법률자문

B씨에 의해 유출된 A사의 정보는 산업기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비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가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 ②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 ③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할 것(경제적 유용성)

④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

B씨가 유출한 A사의 정보가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가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B씨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퇴사 시 영업상 주요 자산의 반출행위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에 따라 업무상배임죄로도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사상 B씨 및 B씨가설립한 기업에 대하여 유출된 정보의 사용금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11조). 더하여 B씨를 상대로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경업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

3. 퇴직자 편

(5) 퇴직자에 대한 소스코드 반납 요청 사례

영상 관련 소프트웨어를 취급하는 A사는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B씨가 퇴사하여 동종업체에 취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B씨는 본인이 개발한 소스코드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으며, 회사에 소스코드가 저장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퇴사 후 파악하였습니다. 이때 A사는 B씨에게 소스코드 반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추후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할까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률자문

A사의 소스코드의 반납에 대하여는 다음의 3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소스코드가 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

먼저 A사는 '산업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해당 소스코드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은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로 보고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4조 제6의3, 제36조 제2항, 제3항)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B씨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사용금지 및 폐기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B씨가 이직한 기업에 해당 소스코드를 전달하고, 이후 소스코드의 일부를 활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소스코드를 사용하였다면, B씨 외에 해당 기업에도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 오픈소스를 제외한 소스코드는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항). 따라서 A사가 B씨에게 소스코드에 대한 삭제 또는 반환 요구를 하였음에도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동법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상 조치로는 소스코드의 사용금지 및 폐기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B씨가 이직한 기업의 가담 여부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조치가함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 산업기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만약 A사의 소스코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소스코드는 A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B씨의 행위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A사의소스코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할 수 있어 동법상의 손해배상 특칙을 이용한 청구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가가능합니다(동법 제2조 제1호 카목. 제4조, 제14조의2 등. 형사처벌대상은 아님). 더하여 이러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사와 B씨 사이에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의 위반 행위에도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금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A사의 소스코드는 B씨가 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A사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소스코드에 관한 저작권은 A사에 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B씨가 A사의 허락 없이 해당 소스코드를 이직한 기업에 전달하거나 사용할 경우, A사의 소스코드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복제권, 배포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법에 의거하여 형사상 고소. 민사상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퇴사 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모두 반납하도록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업무 상 취득한 자료를 모두 반납하였으며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전직금지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목록

-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나.「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라.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바.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복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판례에 따르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 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 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고).

3. 퇴직자 편

(6) 퇴직자의 경쟁업체 전직 대응방안 사례

당사는 작년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최근 관련 기술을 10년 이상 연구했던 직원들이 다수 퇴사하여 경쟁업체로의 이직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 대응 가능한 범위와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법률자문

1) 회사내의 모니터링 강화

- ① 회사내 이직가능 직원들의 활동이력(근무태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자료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기록 등) 모니터링 강화
- ② 회사외부 국내외 동종업계의 관련 정보 수집

2) 퇴작예정자 보유(예상포함) 자료 파악

- ① 퇴직예정자가 보유한 자료 내역 확인
- ② 그 중 어떤 것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또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 필요시 회사 전직원을 상대로 특정 자료가 국가핵심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릴 수 있는 절차 진행(예: 관련 보안교육 등)

3) 퇴직예정자에게 요구 및 증거확보

①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자료의 반환 및 전부 폐기'요구, 그 외 더 이상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요구

거부시 퇴직예정자가 국가핵심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또는 무단사용시 i)민사상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고, ii)형사처 벌의 대상이 됨을 고지(이에 대한 증거로서 '녹음^{1)'} 또는 '증인' 필요)

② 퇴직후 국가핵심기술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 작성요구

거부시 퇴직예정자에게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기핵심기술 누설 등 침해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i)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ii)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고지(이에 대한 증거로서 '녹음' 또는 '증인' 필요)

③ 퇴직후 동종업계에 전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서' 작성요구

거부시 퇴직예정자에게 전직금지약정(재직 중 체결한 경우) 또는 법률(부정 경쟁방지법 제10조,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누설 등 침해행위가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i)법원에 전직금지청구소송 및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ii)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이에 대한 증거로서 '녹음' 또는 '증인'필요)

¹⁾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 녹음할 것을 권고. 비록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녹음파일의 증거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다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3. 퇴직자 편

(7) 계약불이행 및 직원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사례

P사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회사로 C사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개발이 97%정도 완료되어 중간 납품하였고, C사는 계약 연장을 위해 견적서를 요청하였으며 P사는 견적서 전달하였습니다. C사는 상세 견적서를 요청하였고, P사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계약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 손해를 감수하고 특정역할(기능)에 대한 견적만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C사는 연장계약 견적서를 상세하게 만들어주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잔금은 지불하지않았습니다. 계약해지 후 C사에서 P사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고 공지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이 때 P사의 주요 개발자 3인이 C사로 이직한상태였습니다. (이직 전, P사 대표 P씨와의 대화 중 이직하더라도 영업비밀 가져가지말라고 하자, 이직한 3인 중 1인이 '개발자들이 소스코드 같은 영업비밀을 안 가져갈수가 없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P사의 소스코드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계속하여 런칭되고 있으며, 계약 불이행 및 영업비밀 유출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법률자문

1) 결과물(산출물)을 가져간 행위

- ① 소스코드의 저작권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
- ②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주장

비공지성(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 경제적 유용성(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가 있을 것), 비밀관리성(해당 자료들이 비밀로 관리되었을 것)의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 영업비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P사의 소스코드의 경우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이 될 듯 합니다. 다만, 비밀관리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체결한 보안서약서 및 비밀유지를 위한 솔루션 미설치 등을 고려할 때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하도급법 상의 침해 행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로 조사를 하고, 조사를 방해할 시 조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 듯하지만, 해당 조사를 위해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어어야 합니다.

④ 부정경쟁 행위로 주장

P사의 아이디어를 탈취행위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위 2~3번을 위한 비밀관리성 인정이 어려울 경우)

⑤ 기타 성과 도용 행위

성과라는 것을 인정받기는 쉽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인력탈취(인력부당 유인)

비밀유지서약서 안의 전직금지약정의 내용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으나, 전직금지 기간, 직종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에 따라 서약에 따른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를 주장할 수 있으나, 통상 6개월~1년의 전직금지 기간이 인정되고 있고, 이미 전직한 기간이 오래되어 영업비밀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한 전직금지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추가로, 영업비밀을 이미 침해를 당했고 전직금지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사업활동 방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방해요인과 사업활동 방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명확해야 합니다. * 사업활동 방해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심각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대응방안

(3-1) 민사

- ① 손해배상 청구
- ② 행위금지 청구
- ③ 잔금 관련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청구

(3-2) 형사

① 저작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죄의 따른 고소

(3-3) 행정기관 신고

- ① 공정거래위원회
- ② 중소벤처기업부 침해신고

4) 결론

현재 증거로는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요청,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중기부 신고, 조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 기술유출 상담사례집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 상담사례 ■

- 1. 공동연구개발 과정 편
- 2. 기타 협력과정 편



02

외부자에 의한 기술유출 상담사례



1. 공동연구개발 과정 편

(1) 해외 공동연구개발 시 유의사항(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해당 시)

A씨는 P사에서 정보통신 관련 연구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업체에서 P사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제안하였습니다. P사의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국가핵심기술 관련 공정에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 공동연구개발 진행이 우려됩니다. 본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할 시 공동연구개발을 하면 안되는지 궁금하며,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자문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연구개발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제1, 4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이는 공동연구개발도 해당 합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 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 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 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술 해당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신청한 뒤 그 여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기술 확인 및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은 각각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합니다(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제1항). 산업기술의 경우, 법으로 정하여져 있지는 않지만 국가핵심기술에 준하는 관리수준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4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 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등급의 부여와 보안관리규정의 제정
- ②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 ③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의 통신시러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 ④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 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 ⑤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 ⑥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⑦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

해외 소재 기업 또는 그 임직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경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 ①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제공한 자사의 특허나 노하우 처리
- ② 정보 등 제공과 비밀유지 의무
- ③ 연구의 역할분담 또는 비용분담 중지의 경우 처리
- ④ 연구개발 기간의 설정
- ⑤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 ⑥ 지식재산권의 출현 등의 처리
- ⑦ 지식재산권의 실시(제3자에 대한 실시 허락)
- ⑧ 공동연구 종료 후 이용지식재산권의 처리 등

53

1. 공동연구개발 과정 편

(2) 공동연구개발 진행 전 기술유출 대비 방안 문의 사례(계약 체결 관련)

P사는 바이오 관련 연구기관으로 최근 국내기업 A사와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 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을 위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인데,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하는 점이 궁금합니다. 계약서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기술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작성해야하는지 등이 궁금하고 추가로 계약 전 법률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자문

공동연구개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크게 ① 정의조항 및 프로젝트 범위의 구체적 작성, ② 당사자의 역할분담 명확화 및 기반 IP 등에 대한 실시허락의 범위 설정, ③ 개발성과의 권리귀속 및 향후 관리 등에 대한 규정 삽입, ④ 비밀유지의무의 설정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정의조항에 관하여, 어떠한 용어를 정의하였다면 해당 용어는 반드시계약서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하여야 하고, 특히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은 사용되는 단어가 해당 단어의 일상적·사전적 의미와 혼동되지 않도록 단어 선택 및 정의내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연구개발 및 결과물은 거의 모든 경우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특허, 영업비밀 등의 지적재산에 기초하게 되므로,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각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활용을 허락할 필요가 있고, 이를 흔히 "기반 IP"라고 하는데. 기반 IP의 범위를 정의할 때에는 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충분히 포함하되, ② 프로젝트 종료 후에는 자신이 제공한 기반 IP에 대하여 (공동연구개발로 인하여)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기반 IP로 인하여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실시를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반 IP를 비롯하여 각종 기술(예컨대, 연구개발의 성과물 등)을 정의할때에는,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① 특허는 출원·등록번호로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②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는 위와 같은 방식의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뿐 아니라 그 후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령하였는지를 가급적 세심히 추적하여 기록 및 관리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③ 기반 IP를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시점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할지아니면 그 이후에 새롭게 각 당사자가 형성하는 지식재산까지 포함할지 등을 포함한 시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해두어야 합니다.

한편 정의조항에는 개발성과에 대한 정의도 중요합니다. 개발성과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그 범위를 적절히 한정하되 최종 결과물 뿐 아니라 중간 단계의 결과물 내지 성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간 및 범위에 관하여는, 우선 기간의 경우 프로젝트의 진행경과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프로젝트를 조기 종료 또는 연장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인 프로젝트 기간을 규정하는 한편 제반사정에 따라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기간변경을 일방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범위의 경우, 중요한 중간 목표(마일스톤)를 설정하고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그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계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설정한 마일스톤과 연계하여 각 단계별로 기간, 산출물, (중간 및 최종) 보고서의 작성, 대가의 지급 등을 규정하는 것이 범위를 구체화하고 혹시 모를 사정변경 등에 따른 프로젝트 중단 등의 조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역할분담 및 기반 IP의 실시허락 범위 설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의미 뿐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 중 또는 실패 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책임 소재에 관한 논란을 예방하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량적인 지표(예컨대, 비임상 시험에 사용되는 개체의 숫자 등)를 사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행과정에서 일부를 제3자에게 의뢰하거나 위탁하고자 하거나 제3자에 대한 의뢰 또는 위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위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기관과의 계약체결 등을 비롯한 절차와, 제3자의 위탁성과물 귀속 등에 대하여 정의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탁자가 위탁 업무 수행의 결과물에 관한 권리를 모두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위탁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탁자 스스로의 기반 IP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권리도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에 따라 발생한 결과물의 활용이 수탁자의 기반 IP로 인하여 제약을 받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기반 IP의 실시허락 범위 설정에 관하여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기반 IP에 대하여 독점적 실시권을 허여할 것인지, 비독점적 실시권을 허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독점적 실시허락을 부여한다면 상대방 이외의 제3자에게는 실시허락을 부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만약 제3자에게 이미 해당 기반 IP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부여한 상태라면 계약 전에 이를 미리 해소하거나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고 이에 대한 실시허락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반 IP에 대한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기반 IP에 대한 실시권한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개발성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지를 미리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제3자에 대한 재실시허락의 허여여부, 만약 허여한다면 그에 따른 로열티의 분배여부 등을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개발성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조항은 개발성과의 정의 조항 및 개발성과의 관리 및 처분, 실시 등에 관한 조항과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쪽 조항이 변경될 경우 다른 한 쪽의 조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조항들을 모두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계약서 전체가 귀사의 권리 및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발성과의 권리귀속을 정하는 방법은 ① 사전에 미리 정하지 않고 공동연구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성과 발생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② 개발성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공유로 하는 경우, ③ 일방 당사자가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실시허락을 부여하는 경우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후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위원회 구성 및 결정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고도 공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측이 동수로 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부동수가 발생하여 결정이 불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위원을 적어도 1인 이상 두고 위원회를 홀수로 구성하여 위원회 결정이 교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개발성과를 공유로 하는 경우는 가장 흔히 취하는 방식이나 법령상 권리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고 특허의 출원 및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 등에서 공동명의로 대응하여야 하는 등 관리의 측면에서도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는 점은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자 할경우, ① 우리법상 명시적으로 계약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 개발성과를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점, ② 마찬가지로 계약상 별도의 규정 없이는 공유지분의 처분이나 그에 대한 질권 등의 설정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에 따라 처분 또는 실시허락의 제한을위한 우선협상권 규정 등을 두기도 한다는 점, ③ 제3자에 대한 '하청'이 위 1항의 자기실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가급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실시허락을 하는 경우에는 기반 IP의 실시허락과 유사한 쟁점들이 대두됩니다. 이 경우에는 ① 프로젝트 종료후 일방 당사자가 실시한 개량기술도 실시허락 대상에 포함되는지, ② 실시권한이독점적인지 또는 비독점적인지, 허용되는 실시행위의 범위가 어떠하며 재실시허락의 부여가 가능한지, ③ 실시허락에 따른 대가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성과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일방 당사자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실시허락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상대방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도 검토되어야합니다.

다음으로, 개발성과는 특허를 출원할 수도, 영업비밀로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의 속도, 계약 당사자의 영업비밀 관리 능력, 침해의 입증 난이도, 선행 기술에 대한 진보성의 정도, 특허 출원시의 회피 설계의 난이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입장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단계에서부터 미리 원칙을 협의하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성과의 관리방식 외에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는 원칙에는 ① 특허출원과정을 누가 주도하고 담당할지, ② 특허출원의 비용 및 등록료를 누가부담할지, ③ 영업비밀의 경우 어떻게 관리할지, ④ 개발성과의 논문게재를 허용할지 등이 있습니다.

넷째로, 비밀유지의무의 설정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출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먼저 정보 교환 프로토콜을 적절하게 수립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① 교환할 정보의 범위를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② 정보교환의 방식에 관하여 시점, 제공방법, 이 같은 교환 등 소통을 담당할 담당자 등을 지정하며, ③ 교환된 정보의 활용이 종료된 뒤의 폐기 또는 반환 절차 등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도 정보의 입수 및 사용경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컨대 정보를 제공받을 때 제공자의 정당한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권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령을 거절하고 수령거절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하고, 반대로 귀사가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에는 이를 어떻게 관리 하였는지를 상시 확인하고 귀사의 영업비밀과 동등한 수준에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한편 의도치 않게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게 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진술·보장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위 조항은 귀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므로 귀사가 지게 될 부담 역시 고려될 필요는 있습니다.

정보 교환 프로토콜의 수립과 함께, 당사자는 상호 간에 명확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동개발계약서 상에 삽입되는 조항 또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또는 계약에는 ① 비밀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② 비밀유지의무의 기간을 설정하며, ③ 비밀정보에 접근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통제 및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에 관한 통제, ④ 비밀정보의 유지, 관리, 폐기 및 회수방법, ⑤ 비밀유지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 전 법률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귀사 및 상대방의 구체적인 현황과 예정하고 있는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안내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기준으로 하여 P사의 현황이 체결될 공동연구개발계약의 내용과 배치될 우려는 없는지(대표적으로, 기반 IP에 대한 독점적 실시허락을 예정하는 경우, 해당 기반 IP에 대하여 이미 제3자에게 실시허락을 한 바 없는지 등)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공동연구개발 과정 편

(3) 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사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A사는 정보통신 업체인 B사와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A사는 B사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이후 연구개발에 실패하여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B사는 해지 1년 후, A사 기술과 유사한 제품을 시판하였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공동연구개발 시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률자문 -------

크게 민사상의 조치와 형사상의 조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상의 조치는 다시 약정상의 조치와 법정 조치로 구분되는데, A사와 B사 사이 공동연구개발 계약으로 B사가 A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하였다면 A사는 B사에 대하여 약정상의 조치로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연구개발 계약 내에 위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법률상의 권리 행사를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A사가 B사에게 제공한 기술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각항에 의거하여 기술자료 사용금지, 판매금지 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 제품의 폐기를 구하는 청구, 설비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경우라면, 피해배상은 물론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각항, 제22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조치로는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로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 공동연구개발 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주고받은 정보들이 공동연구개발이라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내에 또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 ①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주고받은 정보들은 회사의 비밀이라는 점,
- ② 이에 대한 공개,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
- ③ 비밀유지와 관련된 약정은 여하한 계약 종료사유에도 모두 적용되고,
- ④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술 자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기간 동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의 조항을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위반만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일종의 제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둔다면 계약상 의무조항들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기타 협력과정 편

(1)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대응 사례

O사는 OO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약 1년 전 B사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투자하고 싶다며 사업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O사는 B사와 MOU를 체결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B사에서 O사의 것과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어플은 제공하는 서비스와 UI 등이 O사의 것과 매우 유사하였습니다. O사는 B사에 대해 아이디어 탈취 및 기술 탈취 등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법률자문

O사와 B사간 체결된 MOU의 성격 및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O사와 B사간 체결된 MOU가 대기업 B사의 중소기업 O사에 대한 용역위탁을 위한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경우,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2조 제1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조 제4호 참조

B사는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한 뒤에야 O사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관하여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상생협력법 제25조 참조).

따라서 O사는 B사의 행위가 위 각 의무를 위반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벤처부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중소기업벤처부에 신고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분쟁조정 및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8조의2제1항, 제3항, 제4항) 또한 위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고, 위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O사와 B사간 체결된 MOU가 용역위탁을 위한 약정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경우,

O사와 B사 사이에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관계 또는 상생협력법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2-1) 그러나 만약 O사와 B사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거나, MOU에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MOU 관계에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

B사가 제공받은 자료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상 O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중소기업기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O사는 B사의 행위가 위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고, 또한 B사의 행위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벤처부에 신고 및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3) 한편 O사와 B사의 관계가 하도급거래 관계 또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O사 제공 자료들에 대한 B사의 비밀유지의무도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조항에 근거한 주장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3-1) 만약 O사의 어플리케이션 관련 기술이 특허로 출원되어 등록되었고, B사의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O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고소,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 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제품의 개발과정에서는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회피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B사의 어플리케이션 출시행위가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3-2) 한편, B사의 행위는 사업제안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O사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O사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제공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O사는 B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소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3-3) 또한, O사의 어플리케이션 및 O사가 B사에 제공한 자료들은 O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그렇다면 O사는 B사의 행위가 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O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소정의 기타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및 기타 성과도용행위에 관하여는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B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O사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공개적으로 유영하고 있으므로, B사는

O사의 위 어플리케이션 및 관련 자료들이 이미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다거나, 기타 성과도용행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속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점, 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및 기타 성과도용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대법원 2022. 6. 16.자 2019마6625 결정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관련 주장이 부정경쟁행위 관련 주장에 비하여 그 주장·입증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더 강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2. 기타 협력과정 편

(2)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사례

O사는 전자기기 부품을 제조 및 생산하는 기업으로 A사와의 거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입찰하였습니다. O사는 입찰에 성공하여 A사와 거래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계약을 위한 기술협상 중 O사의 기술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몇 주 후, O사는 A사로부터 기업 내부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O사는 기술자료를 돌려받긴 했지만, A사가 O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A사가 O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후에 A사가 실제로 O사의 기술을 사용한 것을 알아내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법률자문

우선 A사가 O사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비밀유지서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합니다.

- ① O사가 A사에게 제공하였던 기술자료의 특정
- ② 기술자료로 알 수 있는 O사의 기술을 사용,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용에는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과 A사 기술 개발에 참조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
- ③ 통상 제품 개발,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동종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O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것을 간주한다는 내용
- ④ 비밀유지서약서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로 일정금액(A사에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제시)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

참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침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참고). 이에 O사의 기술자료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청구는 A사가 O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할 것이 분명히 예견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이후에 A사가 실제로 O사의 기술을 사용하였다면, 하도급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 제1호에서는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A사가 O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할 경우 본 조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하도급법은 제12조의3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5조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O사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으로 A사를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A사가 사용한 O사의 기술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O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밖에 기술자료의 사용금지,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설비의 폐기청구, 나아가 실추된 신용이 있다면 신용회복 청구까지 가능하며 형사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항 참고).

한편,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아이디어 침탈행위를 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사는 위 규정에 근거해서 A사에 대해 기술자료 침탈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특히 A사의 아이디어 침탈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4조의2 제6항). 비록,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차목의 행위시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동법 제18조 제3항 제1호), 한편으로는 특허청장 등 행정청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7조), O사는 이를 활용하여 특허청 등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이를 활용한 법적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기타 협력과정 편

(3)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대비 방안 문의 사례(NDA체결 관련)

N사는 반도체 부품 관련 회사로, 해외기업과 개발 및 제품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사의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자사 기술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NDA 시 특히 유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NDA 체결 후 기술유출이 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자문

해외기업과 NDA 체결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N사가 해외기업에 제공할 기술자료가 무엇인지: 파일명, 문서명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현재 특정할 수 없다면 메일 계정을 특정하여 특정 메일만 이용하도록 한 뒤 해당 이메일 계정으로 보낸 자료 등으로 기준을 정하여 특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해외기업이 기술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N사의 기술을 사용,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용에는 변형하여 사용, N사 기술 개발에 참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
- ③ 통상 제품 개발,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동종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N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
- ④ NDA 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약벌로 일정 금액(N사에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여 제시하거나 기준을 정하여 제시)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생한 손해는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때, 손해액 역시 N사가 예상되는 피해액, 상대방의 예상되는 매출액을 고려하여 정액으로 정하거나 그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것)

NDA를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을 때, NDA는 계약이므로 N사는 해외기업의 계약 위반행위의 중지를 구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협업 상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N사가 해외기업에 제공한 기술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 비밀로서의 요건도 갖추 경우라면, N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동조 제2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동법 제12조는 실추된 신용의 회복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N사는 NDA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밖에 기술자료의 사용금지,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 설비의 폐기 청구, 나아가 실추된 신용이 있다면 신용회복 청구까지 가능하고. 형사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N사가 해외기업에 제공한 기술자료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에 기한 민사, 형사적 법적 조치도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동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 기술자료 제공 전에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자료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아 개발된 경우) 신청 사전신고(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자료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지 않고 개발된 경우)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동법 제11조 제1항, 제4항).

마지막으로, 해외기업과의 NDA는 해외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도 NDA 체결 시 유의할 점을 파악하여 NDA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소재 국가 법원이 NDA 위반, 기술유출 관련 법 위반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한다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여 기술유출 발생 시 해결할 소재지, 즉, 분쟁해결 관할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기타 협력과정 편

(4) 외주업체의 기술 탈취 사례

▲사는 B사의 자금을 받아 차량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도면을 설계하고, 금형 개발에 성공하여, B사를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거래 중 A사는 B사에게 도면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더 이상의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종료하였고, 이때 B사의 자금으로 제작한 금형은 B사에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사에서 A사 금형과 비슷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B사는 자신의 자금이들어갔기 때문에 괜찮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A사는 B사에 대해 이를 금지하거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납한 금형을 B사가 A사의 합의 없이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B사에 전달된 A사의 도면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을까요?

법률자문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차량 자동차 부품 등 금형 개발과 관련된 정보의 귀속주체가 누가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기본계약서 혹은 외주거래계약서 등(명칭 불문 양 당사자 사이 거래관계에 관하여 정한 계약서)에서 금형 개발과 관련된 정보의 귀속주체를 정한 경우입니다. 권리가 A사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금형 개발 관련 정보는 A사의것이므로, A사는 B사에 대해 금형 및 그 개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사용금지,이를 이용한 제품 생산, 판매 금지 및 도면의 폐기를 청구하거나, B사가 사용하게한 후 기술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계약에서 사용금지의무에

관한 조항까지 두었다면 계약에 의거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 또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하거나,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률들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권리가 B사에게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B사가 해당 금형 및 그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사용·처분하고, 유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 도면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없음은 물론 사용하더라도 기술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정보의 귀속주체를 미루어 판단하게하는 사정이 없는 한, 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라 그 귀속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특허출원, 등록이 누구의 명의로 되었는지는 정보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해당 정보와 관련된 기술이 A사의 특허로 등록되어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묵시적으로 정보의 귀속주체가 A사인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허는 공개된 정보로 비공지성을 요하는 영업비밀과는 성격이 달라, 특허로 등록된 내용 자체를 영업비밀로는 볼 수 없고, 특허로 공개된 정보 외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다른 정보가 있다면 이에 관하여 영업비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해 보호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 어진 성과 등에 해당될 수도 있어 각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하여, 특허로 등록된 발명의 내용에 해당한 다면 특허법에 의거하여 정보(발명)의 사용금지, 유사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도면 폐기, 기술사용료 징수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영업비밀의 보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판례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란 당해 정보를 자신이 직접 생산, 개발한 경우나 매매 또는 실시권허가계약 등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하여 이를 취득하는 등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설계자료를 납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영업비밀 보유자의지위가 원고에서 피고로 이전된다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이상 영업비밀 보유자의 지위는 직접 개발한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는 피고가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거나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는 피고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있는 경우라면 공동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

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계약에 정보 보유자에 대해 정하지 않은 경우, 자금을 지급한 자라고 하더라도 정보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이상 정보의 보유자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례의 판단기준은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그 밖에 영업자산의 보유자 판단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준을 본 사안에 적용해보면, 계약에 금형 관련 개발 정보에 대한 귀속에 관해 정하지 않고, B사의 실질적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금형 관련 개발 정보의 보유자는 A사라고 할 것이므로, A사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해 보호되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 기술보호법에 의해서 정보 사용금지, 유사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도면 폐기, 기술사용료 징수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타 협력과정 편

(5) 유지보수 업체의 기술유출 사례

반도체 장비업체인 A사 직원들은 해당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B사 반도체 공장에 수시로 드나들며 B사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A사 직원들은 확보한 B사 자료를 B사 프로젝트가 끝난 이후에도 가지고 있다가 B사의 경쟁업체인 C사에게 제공 하였습니다. B사는 A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B사는 C사에 대하여 해당 기술의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할 때에 사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법률자문

A사의 직원들은 B사의 반도체 공장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출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B사의 기술자료들에 대하여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협력관계 및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볼 때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그렇다면 A사의 직원들이유지보수 계약이 끝난 뒤에도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가 C사에 제공한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1호, 제2호, 제6의3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유출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 라목 또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판단될 것으로보입니다.

이 경우 B사는 A사에게 위 산업기술 유출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한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A사 및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한편, C사의 경우, 위와 같은 A사 직원들의 자료제공행위가 산업기술의 유출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하였다면, B사는 C사를 상대로 산업기술,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A사가 B사의 기술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에 대하여 C사의 입장에서는 한번 쯤 의심해볼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중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더하여, 이와 같은 유지보수업체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① 유지보수업체를 활용할 경우 유지보수업체와 명시적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출입인력들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 받을 것
- ② 최초 출입 시 영업비밀 침해금지의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것
- ③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출입 시 기술자료 등의 유출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 것

등의 조치들을 사전에 취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업무가 종료된 뒤에는 유지보수업체에 정식으로 공무을 발송하여 제공되었던 기술자료들에 대한 페기를 요청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기술유출을 방지하도록 재차 정리해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2. 기타 협력과정 편

(6) 기술자문을 빙자한 기술유출 사례

A씨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 B사에 파견되어 일하면서, 해당 기술의 사업화 및 수출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이에 필요한 영업비밀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A씨는 B사가 개발해 해외시장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던 기술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중국의 한 회사에 2억 원을 받고 넘기려고 시도하였습니다. A씨는 기술자문 근무가 끝난 후에도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영업비밀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사는 A씨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또한, 외부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을 때,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법률자문 -----

크게 민사상의 조치와 형사상의 조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의 조치는 다시 약정상의 조치와 법정 조치로 구분되는데, B사와 A씨 사이 기술의 사업화와 수출 컨설팅을 위한 기술닥터 계약을 통해 A씨가 B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정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하였다면 B사는 A씨에 대하여 약정상의 조치로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내에 위와 같은 조항이 없다면 법률상의 권리 행사를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B사가 A씨에게 제공한 기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특허출원행위, 중국회사에 판매하려고 한 행위는 부정사용에, 기술자문 종료 후에도 기술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는 부정취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각항에 의거하여 기술자료 사용금지, 판매금지 등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청구, 제품의 폐기를 구하는 청구, 설비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영업비밀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각항, 제22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조치로는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로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하여,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경우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명자나 승계인이 아닌 A씨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이므로, A씨가 특허 출원하여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이기에 B사는 특허무효심판, 소송을 통해 특허 대상이 된 발명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종전에는 위와 같은 발명자나 승계인이 아닌 자가 등록한 특허에 대하여는 반드시 무효심판을 통하여 이를 무효로 한 뒤에 새로이 등록하는 방법을 통하여 되찾아오는 방법만이 가능하였으나, 2016. 2. 29. 특허법 제99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별도의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적인 특허권 이전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명의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외부 컨설팅을 이용할 때,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때, 컨설턴트의 과거 경력, 현재 운영 중인 회사 등을 확인하여 컨설팅을 통해 취득할 정보들을 이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컨설턴트로부터

- ① 컨설팅 대상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사업화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진술보증 조항
- ② 제공받은 기술을 누설, 공개 또는 컨설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의무 조항
- ③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위반만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일종의 제재금)을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

을 두어	외부	컨설팅	과정에서	기술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	다.

2. 기타 협력과정 편

(7)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기술유출 사례

A사는 경영난을 겪던 중, B사로부터 인수합병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후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B사는 인수합병 대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B사의 임직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실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사가 보유한 주요기술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주요기술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관련 공장설비 탐방 등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사가 마무리되고, B사는 A사에게 최초 인수합병 제의시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인수대금을 제시하여, 결국 인수합병 절차는 중단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사가 A사와 유사한 기술을 다루는 C사와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사는 B사가 실사과정에서 얻은 자사의 기술을 유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이 경우 A사는 B사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법률자문

B사는 A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이후 최초 인수합병 제의시보다 훨씬 낮은 인수대금을 제시하여, 사실상 고의로 인수합병절차를 결렬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B사가 진실한 인수합병의 의사 없이 영업비밀 취득을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B사가 영업비밀 취득을 목적으로 인수합병을 가장한 것이라면, 이는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법위반, 업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사는 1차적으로 B사를 형사고소함으로써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고 영업비밀의 추가유출을 방지하며 유출된 기술자료를 회수할 필요가 있고,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면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2차적으로 B사에 대한 민사 가처분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가피해를 막고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2. 기타 협력과정 편

(8) 기술이전과정에서의 기술탈취 사례

N사와 B사는 같은 근본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N사 대표 A씨는 과거 기술공유 및 기술지도를 하며 친분을 쌓은 B사 대표 B씨와 기술상용화 등 협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N사의 기술을 B사로 기술이전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A씨는 자금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해당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 과정 중 B씨와 관계가 틀어졌으며, 기술이전은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하였으나, B씨가 모든 투자유치를 음해하여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N사의 직원을 스카우트하기도 하였으며, 해당 직원으로부터 N사의 기술을 사용하려는 듯하다는 소식을 전달받기도 하였습니다. 계속된 투자실패로 A씨는 외국회사와 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B씨는 N사가 B사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다며 신고하여 N사는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법률자문

B사가 현재 사용중인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N사의 조치방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사와 B사는 같은 근본 기술을 활용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N사와 B사의 기술은 유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B사가 N사의 기술을 탈취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B사가 N사고유의 기술, 또는 N사의 기술 중 특징적인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N사와 B사의 기술이 유사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술탈취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가 현재 사용하는 기술이 N사고유의 기술 내지 N사 기술의 특징적인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일단 1차적으로 대비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B사가 N사의 고유한 기술 또는 N사 기술의 특징적인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N사는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먼저, N사가 과거 B사와 기술공유 및 기술지도를 하며 전달한 자료,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제공된 자료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N사는 B사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또한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를 이유로 한 금지청구 및 손해 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N사의 자료 등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N사가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였는지 여부, 즉 이른바 "비밀관리성"이 가장 문제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사는 위 자료들을 비밀로 적절히 관리하였다는 점등에 관한 증거들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고, 또한 N사가 B사와의 사이에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술이전을 위한 협의가 결렬된 이후 해당 자료들을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위 주장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N사의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N사는 B사의 위 행위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볼여지도 있어 보이며, B사의 행위가 이른바 기타 성과도용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한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 경우, N사는 B사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소제기(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주장을 위하여는 N사는 위 자료들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B사가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들을 잘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B사의 위 기술이 N사와 같은 근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관련 자료의 내용들이이미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졌다거나, 기타 성과도용행위의 보호대상이될 수 없는 공공의 영역에 속한 것(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판결, 대법원 2022. 6. 16.자 2019마6625 결정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68807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점, 위 아이디어탈취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B사의 N사 직원 스카우트에 관하여는, 만약 해당 직원이 B사의 영업비밀 등의 자료를 반출한 사실이 없다면 단순히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만약 B사의 영업비밀 등 자료를 반출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에 더하여 해당 직원 및 B사를 상대로 업무상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등을 이유로 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직원의 전직에 관하여는 전직금지약정 등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지 않다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특히 전직금지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 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여 지지 않을 여지도 있다는 점(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N사가 B사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N사가 압수수색을 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만약 해당 사건에서 N사의 결백이 최종적으로 밝혀졌다면 N사는 B씨의 위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고소를 하는 것을 추가로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허위의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만 성립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참조), 법원에 의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면 고소사실의 최종적인 당부를 떠나 그에 관한 최소한의 소명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여지가 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N사가 취할 법적 조치를 적절히 취사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위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의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는 점 또한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24 기술유출 상담사례집

기술보호 관련 서식

i

- 1. 내부직원 보안서약서
- 2. 외부인 보안서약서
- 3. 영업비밀보호 규정
- 4. 기타 보안서식



03

기술보호 관련 서식



1. 내부직원 보안서약서

(1) 입사자용 보안서약서(국문)

보안서약서

본인은 _____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하면서(휴직기간 포함)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 2.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관리규정 등 관련 방침이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 ①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

- ② 영업비밀, 대외비 등이 표시된 정보
- ③ 통제구역,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시스템,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 등에 보관된 기록매체, 문서, 물건, 정보
- 3.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 4.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 5.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클라우드 업로드, 개인 이메일 송신, 개인 SNS 업로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 또는 유출행위를 일체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 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 6. 본인은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회사가 (1)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사용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것, (2)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본인은 재직 중 및 퇴직 후 [__년간] 다음의 회사, 연구소 등에 취업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자문, 고문 등)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 해설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하나 업무 특성이나 직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및 판매할 예정인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판매할 예정에 있는 회사, 연구소(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불문)
- 나. 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대체재 내지 시장분할의 효과를 가져오는 영업을 하는 회사, 연구소(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불문)
- 다. 위 가, 나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회사, 연구소
- 8. 본인이 만약 위 7.항을 어길 시에는 귀사에 해당 사유 발생 즉시 금 [_]원을 배상할 것을 서약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겠습니다.
- 해설 업무상 관리 예정인 영업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은 조정 가 능하고, 위 조항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삭제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 9. 본인은 회사를 퇴사한 이후 회사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10.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11. 본인은, 입사 전 또는 재직 중에 취득한 타인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상 그 정보의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상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 12. 본인은, 퇴사 시 재직 중에 보유하였던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과 관련된 자료 모두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반납할수 없는 것은 폐기할 것입니다.
- 해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2019. 7. 시행)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해당 자료의 파기나 반환을 요청 받았음에도 그대로 보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제12항은 직원에게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3. 본 서약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해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3조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분 쟁조정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과 유사한 제도로서 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조정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지정되고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정보 유출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소	속 :				
성	명 :		(서명)		
생년월	일 :				
		_		주식회사	귀중

(2) 입사자용 보안서약서(영문)

Security Pledge Agreement

While employed by (or during my vacations) <u>Co., Ltd.</u> (hereinafter "company"), I pledge as follows to protect the company's trade secrets.

- 1. I confirm that the company has ownership of the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cquired in connection with my work, either independently or jointly or by third parties, created, produced, developed, designed or devised, including equivalent products.
- 2. I confirm that the following information corresponds to the trade secrets or business assets of the company, and that I am fully responsible for thoroughly complying with the principle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company's employment rules and trade secret management regulations.
 - ① Information written on trade secret management regulations and other internal regulations of the company
 - 2) Information marked as trade secrets
 - ③ Records, media, documents, items and information stored in restricted areas, computer systems with limited access, storages with locks
 - ①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information managed by the company as trade secrets using means other than the aforementioned ①, ②, ③
- 3. Except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works assigned to me by

the company, I will not use the company's trade secrets and major business assets for personal purposes regardless of reason. I will not disclose trade secrets and business assets to third parties in and out of the company. (Notwithstanding the above, exceptions can be made if prior written consent is granted by the company or if a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llows such use or disclosure.)

- 4. I will never approach unauthorized information or facilities. I will always follow the company's security regulations, guidelines and policies.
- 5. I will not copy, record, shoot, cloud upload, send personal email, upload personal SNS or any other form of reproduction or leakage by other means, except for use in the designated work for the company's trade secrets. I will not have any copies of this personally. (Notwithstanding the above, exceptions can be made if prior written consent is granted by the company or if a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llows such duplication or possession.)
- 6. I will us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the company's computers for business purposes. I understand and agree that
 - (1) the company may monitor information such as the details of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such as computers) or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in cas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leak of technology and

- information that might damage the company.
- (2) the company may peruse the details of such information in case of risks of illegal action 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 7. I will not work for the following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or have any other cooperative relationships (partners, coworkers, advisors, etc.) for [_] years during and after retirement.
 - (1) Companies or research institutes that currently sell or are likely to sell the same or similar products. Companies that currently selling and those that are to be sold (whether or not there is a possibility of using the company's trade secrets)
 - (2) Companies or research institutes that have a substitute effect or market segmentation effect on the company's business (whether or not there is a possibility of using the company's trade secrets)
 - (3) If this does not apply to the Paragraph (1), (2), Companies or laboratories that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use the company's trade secrets
- 8. If I violate Article 7, I pledge to reimburse the company immediately for [_]. If the actual damages exceed the above amount, I will compensate for any excess damages.
- 9. Even after I leave the company, I will neither reveal nor disclose the trade secrets or business assets I have acquired over the course of my work to a third party using any means, unless the company grants its prior consent.
- 10. While I work for or even after I leave the company, I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company if legal disputes occur in regard to the authority of works assigned to me.

- 11. I will not provide or disclose company information that are business secrets of others acquired before or during my work for the company. If I find it inevitable to disclose such information to the company, I will consult with the company in advance so the business secrets of others will not be infringed.
- 12. When I leave the company, I will return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mpany's business secrets, as well as all materials related to the major business assets of the company (including tangible and intangible information) that may influence the company's R&D, marketing and property. I will not personally hold any kind of copy in any form related to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above, and pledge to destroy anything that cannot be returned.
- 13. In the event of any dispute related to this Agreement, I will try to resolve it smoothly in mutual consultation with the company. If not, I will resolve it through the mediation procedur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Settlement) Committee.

I hereby pledge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above. If the company suffers harm due to my violation of the pledges above, I will submit to measures p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s well as other related law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I will also compensate the company for financial losses incurred, and assume full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Box	. +	_	•
176	ш	С	٠

I hereby confirm and understand the above, and sign t	his pledge
Department:	
Name:(Signature) Date of birth:	

Messrs. _____Co., Ltd.

(3) 재직자용 보안서약서(국문)

보안서약서

소	속	:
성	명	:

본인은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으로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주요 영업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 2. 본인은,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아래 기재와 같은 정보 등이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주요 영업자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NO	영업비밀(또는 주요 영업자산) 명칭	구체적인 내용
1		
2		
3		
4		
5		

3. 본인은 제2항의 정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 관련 방침이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 ①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
- ② 영업비밀, 대외비 등이 표시된 정보
- ③ 통제구역,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시스템,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 등에 보관된 기록매체, 문서, 물건, 정보
- 4.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 5.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 6.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클라우드 업로드, 개인 이메일 송신, 개인 SNS 업로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 또는 유출행위를 일체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 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 7. 본인은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회사가 (1)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사용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것, (2)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재직 중 및 퇴직 후 [년간] 다음의 회사, 연구소 등에 취업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자문, 고문 등)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해설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하나 업무특성이나 직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및 판매할 예정인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판매할 예정에 있는 회사, 연구소(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불문)
- 나. 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대체재 내지 시장분할의 효과를 가져오는 영업을 하는 회사, 연구소(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불문)
- 다. 위 가, 나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회사, 연구소
- 9. 본인이 만약 위 8.항을 어길 시에는 귀사에 해당 사유 발생 즉시 금 []원을 배상할 것을 서약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겠습니다.

해설 업무상 관리 예정인 영업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은 조정 가능하고, 위 조항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삭제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 10. 본인은 회사를 퇴사한 이후 회사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11.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12. 본인은, 입사 전 또는 재직 중에 취득한 타인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상 그 정보의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상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 13. 본인은, 퇴사 시 재직 중에 보유하였던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과 관련된 자료 모두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할 것입니다.
- 해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2019. 7. 시행)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해당 자료의 파기나 반환을 요청 받았음에도 그대로 보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제13항은 직원에게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4. 본 서약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기술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해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3조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과 유사한 제도로서 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조정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지정되고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정보 유출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주식회사 귀중

Department:

assets.

(4) 재직자용 보안서약서(영문)

Security Pledge Agreement

Name:
As a staff member/employee ofCo., Ltd. (hereinafter "company"), I pledge as follows to protect the company's trade secrets and marketing assets.
1. I confirm that the company has ownership of the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acquired in connection with my work, either independently or jointly or by third parties, created, produced, developed, designed or devised, including equivalent products.
2. I clearly understand that any and all information or data acquired over the course of doing my work (write specific work), as written below, constitute the company's trade secrets or major marketing

NO	Trade secrets (or major marketing assets)	Notes
1		
2		
3		
4		
5		

- 3.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in Article 2,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be confirmed to be the company's trade secrets or operating assets, and shall be fully complied with and responsible for the relevant policies or policies, such as the employment rules and the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rade secrets.
 - ① trade Secret Management Regulations, other technical and management information that the Company manages as a trade secret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internal regulations.
 - 2 information showing trade secrets, confidential information, etc.
 - ③ restricted zones, computers with limited access, recording media stored in locked lockers, documents, objects, information, etc.
- 4. Except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works assigned to me by the company, I will not use the company's trade secrets and major business assets for personal purposes regardless of reason. I will not disclose trade secrets and business assets to third parties in and out of the company. (Notwithstanding the above, exceptions can be made if prior written consent is granted by the company or if a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llows such use or disclosure.)
- 5. I will never approach unauthorized information or facilities. I will always follow the company's security regulations, guidelines and policies.
- 6. I will not copy, record, shoot, cloud upload, send personal email, upload personal SNS or any other form of reproduction or leakage

by other means, except for use in the designated work for the company's trade secrets. I will not have any copies of this personally. (Notwithstanding the above, exceptions can be made if prior written consent is granted by the company or if a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llows such duplication or possession.)

- 7. I will use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the company's computers for business purposes. I understand and agree that
 - (1) the company may monitor information such as the details of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such as computers) or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the internet) in case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leak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that might damage the company.
 - (2) the company may peruse the details of such information in case of risks of illegal action 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 8. I will not work for the following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or have any other cooperative relationships (partners, coworkers, advisors, etc.) for [] years during and after retirement.
 - (1) Companies or research institutes that currently sell or are likely to sell the same or similar products. Companies that currently selling and those that are to be sold (whether or not there is a possibility of using the company's trade secrets)
 - (2) Companies or research institutes that have a substitute effect or market segmentation effect on the company's business (whether or not there is a possibility of using the company's

trade secrets)

- (3) If this does not apply to the Paragraph (1), (2), Companies or laboratories that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use the company's trade secrets
- 9. If I violate Article 8, I pledge to reimburse the company immediately for []. If the actual damages exceed the above amount, I will compensate for any excess damages.
- 10. Even after I leave the company, I will neither reveal nor disclose the trade secrets or business assets I have acquired over the course of my work to a third party using any means, unless the company grants its prior consent.
- 11. While I work for or even after I leave the company, I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company if legal disputes occur in regard to the authority of works assigned to me.
- 12. I will not provide or disclose company information that are business secrets of others acquired before or during my work for the company. If I find it inevitable to disclose such information to the company, I will consult with the company in advance so the business secrets of others will not be infringed.
- 13. When I leave the company, I will return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mpany's business secrets, as well as all materials related to the major business assets of the company (including tangible and intangible information) that may influence the company's R&D,

marketing and property. I will not personally hold any kind of copy in any form related to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above, and pledge to destroy anything that cannot be returned.

14. In the event of any dispute related to this Agreement, I will try to resolve it smoothly in mutual consultation with the company. If not, I will resolve it through the mediation procedur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Settlement) Committee.

I hereby pledge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above. If the company suffers harm due to my violation of the pledges above, I will submit to measures p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s well as other related law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I will also compensate the company for financial losses incurred, and assume full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Date:

I hereby confirm and understand the above, and sign this pledge.

Signed by:	(Signature)
Massrs	Co Itd

(5) 퇴사자용 보안서약서(국문)

보안서약서

본인은		주식회시	}(o)	하 "회사"	라 한다	가)를 <u>구</u>	체적인 퇴	<u> </u>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1. 본인은 *구체적인 직급*으로서 *구체적인 담당업무*를 수행하며 아래와 같은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취급하여 왔습니다.

NO	영업비밀(또는 주요 영업자산) 명칭	구체적인 내용
1		
2		
3		
4		
5		

- 2. 본인은 제1항의 정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에 대한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관리규정 등 관련 방침이나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 ①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
 - ② 영업비밀, 대외비 등이 표시된 정보
 - ③ 통제구역, 접근이 제한된 컴퓨터시스템,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 등에 보관된 기록매체, 문서, 물건, 정보

- 3.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비롯한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4.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접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 등을 준수하였습니다.
- 5.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클라우드 업로드, 개인 이메일 송신, 개인 SNS 업로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 또는 유출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 6. 본인은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업무용으로 정당 하게 사용하여 왔으므로 회사가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 7. 본인은 퇴직 후 [년간] 다음의 회사, 연구소 등에 취업 또는 기타 협력관계(동업, 자문, 고문 등)를 가지지 않겠습니다.

해설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하나 업무특성이나 직위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 회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및 판매할 예정인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거나 잠재적으로 판매할 예정에 있는 회사, 연구소(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불문)
- 나. 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대체재 내지 시장분할의 효과를 가져오는 영업을 하는 회사, 연구소(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불문)

- 다. 위 가, 나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회사, 연구소
- 8. 본인이 만약 위 7.항을 어길 시에는 귀사에 해당 사유 발생 즉시 금 []원을 배상할 것을 서약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겠습니다.
- 해설 업무상 관리 예정인 영업비밀의 중요도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은 조정 가능하고, 위 조항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삭제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 9. 본인은 회사를 퇴사한 이후 회사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10. 본인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11. 본인은, 퇴사 시 재직 중에 보유하였던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 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과 관련된 자료 모두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였습니다.
- 해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상(2019. 7. 시행) 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해당 자료의 파기나 반환을 요청 받았음에도 그대로 보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제11항은 직원에게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2. 본 서약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해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3조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과 유사한 제도로서 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조정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지정되고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정보 유출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公	辛	•	-		
성	명	:	<u>(서명)</u>		
				주식회시	ㅏ 귀중

(6) 퇴사자용 보안서약서(영문)

Security Pledge Agreement (for Outgoing Employees)

As I leave	Co., Ltd. (hereinafter	"company") in (specific
date), I pledge as follo	ows on the protection	of the company's trade
secrets and business a	assets.	

1. As a (specific position) of the company conducting (specific works), I have handled the following trade secrets and business assets.

No	Trade secret (or major business asset)	Details
1		
2		
3		

- 2. In addition to the information in Ariticle 1, the following information shall be confirmed to be the company's trade secrets or operating assets, and shall be fully complied with and responsible for the relevant policies or policies, such as the employment rules and the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rade secrets.
 - ① trade Secret Management Regulations, other technical and management information that the Company manages as a trade secret in accordance with the company's internal regulations.
 - 2 information showing trade secrets, confidential information, etc.

- ③ restricted zones, computers with limited access, recording media stored in locked lockers, documents, objects, information, etc.
- 3. Except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works assigned to me by the company, I have not used the company's trade secrets and major business assets for personal purposes regardless of reason. I have not disclosed trade secrets and business assets to third parties in and out of the company.
- 4. I have never approached unauthorized information or facilities. I have always followed the company's security regulations, guidelines and policies.
- 5. I have not copied, recorded, shot, cloud uploaded, sent personal email, uploaded personal SNS or any other form of reproduction or leakage by other means, except for use in the designated work for the company's trade secrets. I have not had any copies of this personally. (Notwithstanding the above, exceptions can be made if prior written consent is granted by the company or if a regul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allows such duplication or possession.)
- 6. I have used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s such as the company's computers for business purposes. If the company is concerned about tort or trade secret, I understand and agree that the company will be able to access the relevant information.

- 7. I will not work for the following companies, research institutes, or have any other cooperative relationships (partners, coworkers, advisors, etc.) for [] years during and after retirement.
 - (1) Companies or research institutes that currently sell or are likely to sell the same or similar products. Companies that currently selling and those that are to be sold (whether or not there is a possibility of using the company's trade secrets)
 - (2) Companies or research institutes that have a substitute effect or market segmentation effect on the company's business (whether or not there is a possibility of using the company's trade secrets)
 - (3) If this does not apply to the Paragraph (1), (2), Companies or laboratories that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use the company's trade secrets
- 8. If I violate Article 7, I pledge to reimburse the company immediately for []. If the actual damages exceed the above amount, I will compensate for any excess damages.
- 9. Even after I leave the company, I will neither reveal nor disclose the trade secrets or business assets I have acquired over the course of my work to a third party using any means, unless the company grants its prior consent.
- 10. While I work for or even after I leave the company, I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company if legal disputes occur in regard to the authority of works assigned to me.

- 11. When I leave the company, I will return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mpany's business secrets, as well as all materials related to the major business assets of the company (including tangible and intangible information) that may influence the company's R&D, marketing and property. I will not personally hold any kind of copy in any form related to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above, and pledge to destroy anything that cannot be returned.
- 12. In the event of any dispute related to this Agreement, I will try to resolve it smoothly in mutual consultation with the company. If not, I will resolve it through the mediation procedure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Settlement) Committee.

I hereby pledge to faithfully comply with the above. If the company suffers harm due to my violation of the pledges above, I will submit to measures p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s well as other related laws and the company's regulations. I will also compensate the company for financial losses incurred, and assume full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Date:

I hereby confirm and understand the above, and sign this pledge.

Department:		
Name :	(Signature)	
	Messrs.	Co Ltd

소

(7) 영업비밀 자료 반납 확인서

속:____

영업자산을 아래와 같이 반환, 폐기합니다.

영업비밀 자료 반납 확인서

성	명 :							
1.	본인은 20		자로	주	식회사	(이하, '	회사'라	함)를
	퇴사한에	인어서	보아과리자와	혅의하여	회사의	영엇비	믹 기타	주요

NO	영업비밀 기타 주요 영업자산	관련 매체, 저장소	비고 (반환/폐기)
1	(ex: USB에 담긴 모든 파일)	(ex: 삼성 무슨 색 USB)	(ex: 반환)
2	(ex: 고객제안서)	(ex: 개인 네이버 클라우드)	(ex: 폐기)
3			
4			
5			

- 2, 본인은 위 표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회사의 영업비밀 기타 주요 영업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다짐합니다.
- 3. 만약, 퇴사 후 본인에게 위 표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영업비밀 기타 주요 영업자산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경우, 본인은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통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20 년 월 일
보안 관리자 :	(서명)
제 출 자 :	(서명)
	주식회사 귀중

(8) 프로젝트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프로젝트명 :	
프로젝트 기간 : _	
본인은	_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 의 상기 프로젝트에 참여함에
있어 회사의 영업	비밀 및 기타 주요 영업자산 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1. 본인은 프로젝트 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거나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 2. 본인은 프로젝트 기간 중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비밀로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 및 회사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 3. 본인은 프로젝트 기간 중이나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지득한 정보를 복사, 녹음, 촬영, 클라우드 업로드, 개인 이메일 송신, 개인 SNS 업로드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 또는 유출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 4. 본인은 프로젝트 기간 중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통제구역, 허가 받지 않은 정보,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영업비밀을 복제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보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5. 본인은 회사가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전산 ID 및 패스워드, 출입증 등을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고, 절대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대여.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 6. 본인은 프로젝트 종료시 또는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상기 프로젝트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게 반납하거나 반납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 7. 본인은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회사가 (1)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사용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것, (2)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 8. 본인은, 입사 전 또는 재직 중에 취득한 타인의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거나 개시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상 그 정보의 개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상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 9. 본 서약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해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3조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과 유사한 제도로서 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조정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지정되고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정보 유출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 및 사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소	속	:	 _		
성	명	:	 (서명)		
				주식회사	귀중

2. 외부인 보안서약서

(1) 공동프로젝트 수행 시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이번 귀사의 ________ 프로젝트에 그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 프로젝트 추진의 사실, 그 성과 및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귀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외부인은 물론 귀사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2. 본 프로젝트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 3. 본 프로젝트가 완료된 경우 및 프로젝트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비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 및 프로젝트 성과물들을 즉시 귀사에 반납 및 폐기하며`처리 결과에 대한 귀사의 확인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해설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싶으시면, "… 반납 및 폐기하며 반납 및 폐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귀사에 제공하여 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4. 본 프로젝트 추진의 사실, 그 성과 및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귀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재직 중은 물론 프로젝트 기간 종료 이후에도 년간 자신을 위해 또는 귀사와 경업하는 사업자 그 외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5. 본 서약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 해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3조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과 유사한 제도로서 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조정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지정되고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정보 유출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소	속	:	 -	
성	명	:	(서명)	
				주식회사 귀중

(2) 용역·협력업체용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용 역 명 :	
계 약 기 간 :	
본 업체는 <u>20</u> 자로 주식회사	와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아래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비밀로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 및 회사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NO	영업비밀(또는 주요 영업자산) 명칭	구체적인 내용
1		
2		
3		
4		
5		

해설 비밀로 유지할 대상에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귀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일 이것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표를 두지 않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설 1.항의 '회사의 각종 규정'과 관련하여, 용역·협력업체에게 귀사의 보안 규정을 제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2. 본 업체는 계약 이행기간 중 및 계약 이행기간 이후에도 귀사와 체결한 계약에 기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귀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경쟁 업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공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3. 본 업체는 귀사와 체결한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해제 등 어떠한 사유로든 종료된 경우 즉시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영업비밀 기타 관련 자료 일체를 귀사에 전부 반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하며 어떠한 형태의 사본 또는 복제물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 4. 본 업체는 귀사로부터 사전에 허가 받지 않은 통제구역이나 정보, 시설 등에는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로부터 편의상 제공받은 전산 ID, 패스워드, 출입증 등은 본 업체만이 사용하며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대여, 양도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이를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 5. 본 업체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은 물론이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견, 취득하였거나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이 귀사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를 귀사에 귀속시킬 것을 서약합니다.
- 6. 본 업체는, 정기적인 직원 보안교육을 통해 업무상 알게 된 귀사의 영업비밀 기타 관련 자료의 보호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 7. 본 업체는 본 업체의 임직원이 본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며, 본 업체의 임직원이 본

서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본 업체는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 해설 업무에 관여하는 용역·협력업체 임직원들의 목록을 본 서식에 별도로 첨부할수 있고,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별로 별도의 서약서를 추가로 징구 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8. 본 서약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본 업체는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 해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3조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과 유사한 제도로서 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조정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지정되고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정보 유출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명)	
		_ 주식회사 귀중

(3) 퇴사자를 채용한 회사에 대한 내용증명 서식

통 지 서

수 신:	주식회사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저희 회사의	· 성명)은 저희 회사에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고, 이와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희 회사는 사 시 보안서약서 및 전직금지약정서를 제출 받은 바				
재직기간					
소속					
직급					
담당업무					
따라서, 귀사에서 위의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해설 본 서식은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채용 철회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경고장'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서명)				

3. 영업비밀보호 규정

(1) 영업비밀 관리규정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_____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지식을 말한다.
- 2. "정보자산"이라 함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포괄한 개념을 말한다.
- 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영상매체시설물 등 "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 4.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해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019. 7. 시행)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부분이 '비밀로 유지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개정법에 맞추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5.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6.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에 재직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제3조 (보안업무의 분류) ①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해 "일반업무"와 "보안업무"로 구분하고, "보안업무"는 다시 "시스템보안업무"와 "일반보안업무"로 구분된다.
 - ② "시스템보안업무"는 컴퓨터, 정보통신망 등 주로 컴퓨터를 통하여 진행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보안업무를 말하며, "일반보안업무"는 그이외의 모든 부문의 정보보안업무를 말한다.
- 제4조 (적용범위, 보호대상) ① 이 규정은 회사에 신규채용·재직·퇴직하는 모든 임직원과 외부 협력업체와 파트너 기타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를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 1. 영업비밀 그 자체
 - 2.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 및 물체(예시 : 서류, 도면, 복사물, 자기테이프, 컴퓨터, CD, DVD, USB, 외장HDD, 전화기, 자재, 생산품, 등)
 - 3. 영업비밀 생산설비와 장비
 - 4. 영업비밀 통제구역
 - 5. 지식재산권
 - 6. 기타 회사 기밀과 관련된 정보자산

제2장 영업비밀의 보호관리

제5조 (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① 회사는 영업비밀 기타 정보자산의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회사 내 모든 보안업무를 총괄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②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서별 영업비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 2. 소관 영업비밀의 등급분류
- 3.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 실시
- 4. 영업비밀 보유현황 조사 및 관리 감독
- 5. 비밀유지계약 및 서약서등의 집행
- 6. 보안관련 규정 및 지침 수립·조정
- 7. 기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기타 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대표이사에게 보안업무의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개발하거나 창출하였을 경우에도 같다.
- ④ 회사의 각 부서장은 부서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제6조의 1급비밀을 제외한다)의 관리책임자로서 제2항 제1호 내지 5호 및 제7호의 직무를 수행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⑤ 보안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장과 보안업무에 관한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사내 주요 보안상황을 공유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 임직원에게 공지한다.
- 제6조 (영업비밀의 분류와 기준) ① 회사는 영업비밀에 대해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1급비밀", "2급비밀", "3급비밀" 등 3단계로 분류하고, 필요시 그 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1급비밀"이란 경쟁사 또는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 1. 회사의 원천기술 및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과 관련된 사항
 - 2. 세계 초일류 기술, 국방·안보관련 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되는 사항

- 3. 회사의 영업전략, M&A 기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
- ③ "2급비밀"이란 경쟁사 또는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수 있는 영업비밀 중 "1급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비밀을 말한다.
- ④ "3급비밀"이란 "1급비밀" 또는 "2급비밀"이 아닌 "영업비밀"을 말한다.
- ⑤ 영업비밀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한다. 다만, 회사의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각 부서장은 각 영업비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제2호, 제3호의 보관기간보다 장기간을 보존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1급비밀 : 영구보존

2. 2급비밀 : 10년

3. 3급비밀 : 5년

제7조 (영업비밀 표시 및 보관) ① 영업비밀은 그 표지에 "대외비" 표시와 함께 각 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1급 비밀 : 대외비 | 1급

2. 2급 비밀 : 대외비 | 2급

3. 3급 비밀 : 대외비 | 3급

- ② 영업비밀이 화체된 서류, 물건 등은 일반 문서, 물건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보관함, 금고 등 보안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용기에 넣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 ③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문서는 일반 전자문서와 분리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영업비밀 취급자격이 있는 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 (영업비밀 통제구역 설정) ① 영업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 시 CCTV와 시건장치 기타 통제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나 설비를 설치한다.
 - ② 제1항의 통제구역에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 "통제구역"임을 표시하고 회사로부터 사전에 허가 받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통제구역에는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여 출입자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출입자로부터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각서 또는 서약서를 징구 해야 한다.
- 제9조 (관리대장) 각 영업비밀의 관리책임자는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등급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비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함)을 비치하고 변동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 (취급자격)** 제6조에 의하여 분류된 영업비밀의 취급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1급 비밀 :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지정한 임직원, 보안관리책임자
 - 2. 2급 비밀 : 1급 비밀 취급자, 해당 영업비밀이 속한 담당부서의 부서장 및 실무 담당자
 - 3. 3급 비밀 : 2급 비밀 취급자와 동일
- **제11조 (보안점검)** ① 보안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각 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한 이후 특정 임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 (복구) 각 영업비밀의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관리책임자 및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 (물품의 반입, 반출) ① 회사의 자산 및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임직원은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관련부서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휴대용을 포함하며, 이하 '컴퓨터'라 한다) 및 USB메모리, 외장 HDD 등 전자기록매체(이하 '전자기록매체'라 한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보안관리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컴퓨터 또는 전자기록매체를 반입·반출하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반출일자, 기기사양, 사용용도, 사용자정보 등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담당 부서장은 이를 직접확인한 이후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하다.
- ④ 보안관리책임자는 제3항의 서류를 별도로 보관하고, 회사 내의 컴퓨터 및 전자기록매체 등의 존재 및 사용현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 (비상대책) ① 영업비밀 관리책임자는 화재나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복사본 작성이 필요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보안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복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리책임자는 화재나 자연재해 및 회사의 기밀유출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전체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영업비밀의 생성과 취득

제15조 (영업비밀의 창출 및 귀속)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은 회사의 소유이며, 해당 임직원은 이를 회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자신의 일반적 지식, 경험, 기술에

근거하여 창출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정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이나 규정에 따르고, 그 약정이나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 임직원의 소유로 한다.

- 제16조 (영업비밀 신고) ① 임직원이 재직 중 영업비밀을 창출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타인과 공동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창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보상) 임직원이 창출한 영업비밀 중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고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8조 (취득)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관련부서의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관련부서의 부서장은 이를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임직원이 창출한 영업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4장 영업비밀의 사용

- 제19조 (사용) ① 회사의 영업비밀은 제10조에 따라 영업비밀 취급자격이 인정되는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 ②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비밀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위 관리책임자는 신청인의 영업비밀 취급 자격을 확인한 이후 그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업비밀 사용대장(이하 '사용대장'이라 함)에 신청내역을 기재한 이후 해당 영업비밀을 반출하거나 사용토록 하여야한다. 이때 제1급비밀의 사용 또는 반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관리책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0조 (양도) ① 영업비밀을 양도할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영업비밀 관리책임자, 보안관리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영업비밀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을 양도한 후에도 필요에 따라 관계기록을 폐기하지 않고 영업비밀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제21조 (부서간 사용) 회사 내부의 부서간 영업비밀을 대여 사용 유통을 위하여 이송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부서 책임자간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업비밀을 이송 받은 부서의 책임자는 해당 영업비밀의 사용이 종료되는 때에는 즉시 인수인계절차를 거쳐 해당 영업비밀을 원래 보관하고 있던 부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22조 (이송방법) ① 영업비밀을 사내에서 대여·사용·유통을 위하여이송할 때에는 밀폐포장이나 용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부득이 영업비밀을 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송할 때에는 보안이 설정된 파일 등을 활용하거나 주요내용 부분은 이를 분리하여 이송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 (관리, 폐기) ① 회사의 영업비밀은 별표1. 영업비밀별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 ② 더 이상 활용가치가 없는 영업비밀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폐기할 수 있으며, 폐기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호·관리한다.

제5장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의무

제24조 (입사시) 회사가 신규로 채용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해야 한다.

- 제25조 (재직 중 영업비밀누설 금지) ① 임직원은 재직 시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취급·관리해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유출·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② 연구개발 결과, 신제품 등을 발표하거나 전람회 등에 출품하여 부득이하게 영업비밀을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영업비밀의 관리책임자 및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의 재직 중에 정기적으로 별지 제4호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참여 등 필요 시에는 별지 제5호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26조 (퇴직 시) ①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재직 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공개·유출 또는 사용할 수 없다.
 - ②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그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비밀을 반납 받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 해야 한다.

해설 I. 내부직원 보안서약서 - 6. 퇴사자용 보안서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6장 협력업체 등에 대한 비밀관리

제27조 (협력업체 기타 제3자) 협력업체 기타 제3자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하거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할 경우 해당 협력업체 기타 제3자로 하여금 별지 제7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II. 외부인 보안서식 - 2. 용역·협력업체용 보안서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공동 프로젝트, 기술제휴계약) ① 회사가 외부 기관 등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의뢰하거나, 외부 기관과 사이에 기술제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외부 기관의 참여 임직원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고, 외부 기관과 사이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유지 계약서에 따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야 한다.

해설 I. 내부직원 보안서약서 - 8. 프로젝트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및 II. 외부인 보안서식 - 1. 공동프로젝트 수행 시 보안서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외부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제1항의 제8호 서식 또는 제9호 서식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시스템 보안관리

- 제29조 (컴퓨터 사용) ①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자는 사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이 없다.
 - ② 회사 내 모든 컴퓨터 사용자는 바이러스 침입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각종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백업 및 업데이트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 (통신망 사용)** ① 임직원들은 회사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신망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보안관리 부서 및 보안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및 업무효율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상의 특정 사이트 접속을 통제할 수 있다.
- ③ 임직원들은 회사에서 사용을 금지한 이메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④ 임직원들은 외부로 문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전결권한이 있는 임직원은 그렇지 아니하다.
- **제31조 (시스템 관리)** ① 보안관리책임자는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체 임직원에게 공개한다.
 - ② 임직원들은 회사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발견한 즉시 보안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시스템보안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는 외에 별도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영업비밀 침해구제

- 제32조 (구제조치) ① 보안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 당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법령 및 사규에 의한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보안사고 발생시 업무담당자와 보안관리책임자 등 관련자는 사건 조사 및 해결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33조 (영업비밀누설자에 대한 징계) 영업비밀 누설자에 대해서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별도로 사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34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영업비밀 누설을 부주의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거나 막지 못한 관계자에 대해서도 사규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 **제35조 (교육)** ① 보안관리책임자는 전체 임직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영업비밀 교육은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해설 보안교육 진행시, 교육 안내 공지, 출석부, 교육 사진 등을 마련하여 보안교육 진행 내역을 관리 및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__년 __월 __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 시행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중 주요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규정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등급분류(재분류)를 하여 등급을 지정(재지정)한다.
- 1. '1급 비밀'을 기록한 문서, 도면, 사진, 서적, 자기 테이프, FD, CD, 컴퓨터 서버 등 (이하 '기록매체')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보관

- 기록매체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기록매체의 요지를 기입한 후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엄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열쇠 등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 전자화된 정보를 정보시스템 기기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정보시스템 기기를 통제 구역 내에 설치한다. 만일 해당 정보시스템 기기를 통제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자화된 정보를 외부기록매체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외부 기록매체를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 등에 엄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열쇠 등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2) 열람

-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기록매체를 열람할 수 없다.
- 해당 정보에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자는 기록매체를 열람할 수 없다.
- 전자화된 정보의 화면 표시는 입실이 제한되고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실재하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실시되어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열람자명, 일시 등을 기록한다.

(3) 복제

-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기록매체를 복제할 수 없다. 이때 복제물은 워본과 동등하게 '1급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 전자화된 정보의 복제는 관리책임자만이 실시할 수 있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복제자명, 일시, 목적 등을 기록하다.

(4) 반출

-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기록매체를 반출할 수 없다.
- 관리책임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도 허가를 받은 본인만이 기록매체를 소지하도록 하며 유출 및 분실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반출자명, 일시, 목적, 반환시기 등을 기록한다.

(5) 폐기

• 기록매체는 사용 후 기록매체를 배부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 폐기하도록 한다.

- 전자화된 정보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3자가 잔류정보를 해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폐기하도록 한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폐기 일시 등을 기록한다.

2. '2급 비밀' 기록매체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보관

- 기록매체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기록매체의 요지를 기입한 후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엄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열쇠 등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 전자화된 정보를 정보시스템 기기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정보시스템 기기를 통제 구역 내에 설치한다. 만일 해당 정보시스템 기기를 통제 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자화된 정보를 외부기록매체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외부기록매체를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 등에 엄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열쇠 등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2) 열람

- 기록매체는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록매체 소지자의 책임 하에서 관계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다.
- 전자화된 정보의 화면 표시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실시되어야 한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열람자명, 일시 등을 기록한다.

(3) 복제

- 기록매체는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록매체 소지자의 책임 하에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복제물은 원본과 동등하게 '2급 비밀'로 취급해야 한다.
- 전자화된 정보의 복제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기록매체를 배부받은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복제자명, 일시, 목적 등을 기록한다.

(4) 반출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록매체를 반출할 수 있다.
- 이 경우 기록매체를 반출한 본인만이 기록매체를 소지하도록 하며 유출 및 분실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반출자명, 일시, 목적, 반환시기 등을 기록한다.

(5) 폐기

- 기록매체는 사용 후 기록매체를 배부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 폐기하도록 한다.
- 전자화된 정보는 제3자가 잔류정보를 해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폐기하도록 한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폐기 일시 등을 기록한다.

3. '3급 비밀' 기록매체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1) 보관

• 기록매체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기록매체의 요지를 기입한 후 다른 문서와 구별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전자화된 정보를 정보시스템 기기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전자화된 정보를 외부기록매체에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외부기록매체를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 등에 엄중히 보관해야 한다. 이 때 열쇠 등은 관리책임자가 보관한다.

(2) 열람

전자화된 정보의 화면 표시는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실시되어야 한다.

(3) 복제

- 기록매체는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록매체 소지자의 책임 하에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전자화된 정보의 복제는 중대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록매체를 배부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복제자명, 일시, 목적 등을 기록한다.

(4) 반출

- 기록매체를 반출한 본인만이 기록매체를 소지하도록 하며 유출 및 분실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사용대장에 반출자명, 일시, 목적, 반환시기 등을 기록한다.

(5) 폐기

- 기록매체는 사용 후 기록매체를 배부 받은 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방법에 의해 폐기하도록 한다.
- 전자화된 정보는 제3자가 잔류정보를 해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폐기하도록 한다.
- 관리책임자는 영업비밀 관리대장에 폐기 일시 등을 기록한다.

4. 기타 보안서식

(1) 비밀유지계약서(국문)

비밀유지계약서

해설 본 서식은 비밀정보를 쌍방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_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_	주식회서	나 (이하 "을"이라
한다)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	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	약(이하 "본 계약"이	이라 한다)을 체	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간에 자신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표 또는 대리인)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조정 및 협의를 하고 비밀정보를 제공 및 수령하는데 있어서 양 당사자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갑"	:	
"을"	:	

제3조 (비밀정보)

-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이하 "제공자")가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이하 "수령자")에게 제공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인쇄물이나 컴퓨터파일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열람 허용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경우 및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수령자가 제공자로부터 지득하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 다만, 수령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수령자의 본 약정 위반 또는 기타 귀책사유 없이 공연히 알려진 정보
- 2. 수령자가 제공자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 3. 수령자가 본 약정에 따라 제공자로부터 지득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
- ②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는 [별첨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 내역]과 같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 내역]과 같다.

해설 계약상 주고받는 비밀정보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 자체에 표시하여도 무방하나, 통상 계약 이행에는 1건의 정보가 교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첨 자료로 표시하는 것이 비밀보관 및 관리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 ③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 당시 "대외비", "비밀","祕" 등의 표시로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갑"과 "을" 상대방에게 구두, 음향, 시각적 표현 등으로 인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기 어려운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제공 당시 비밀정보임을 고지하고 15일 이내에 비밀정보임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비밀정보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비밀정보임을 문서로 통지 받지 못할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 ③항 및 ④항의 조치 없이 제공된 정보는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제공자는 위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주장할수 없다.

해설 귀사가 비밀정보의 제공자인 경우에는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지 않은 정보도 비밀정보로 취급될 수 있도록, 비밀유지 의무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⑤ 위 ③항 및 ④항에 따라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제공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된다.]

⑥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표시나 고지, 문서 통지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조 (비밀유지의무)

- ①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비밀 정보를 본 사업 외의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비밀 정보를 임의로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하는 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
- ②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주의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갖고 해당 비밀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임직원에게만 비밀정보의 접근을 허가하고, 그러한 임직원에게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주지시키고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비밀정보의 제3자 유출, 오사용 등침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 통지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비밀정보 수령자는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는 한, 어떠한 제3자(수령자의 계열사나 협력업체를 포함함)에게도 비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수령자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였다가 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수령자는 위 제3자와 연대하여 제공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2.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본 계약의 제4조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자에게 제출할 것
- 3. 위 제3자와의 비밀유지 약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권리가 제공자에게 있으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는 제공자에게 귀속함을 명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자에게 제출할 것
- 4. 제3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확약시키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자에게 제출할 것

제5조 (비밀유지 의무이행 확인)

수령자는 제공자로부터 비밀정보의 비밀유지의무 이행 정도의 확인을 요구받을 경우 제공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해설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규정입니다. 필수적이지는 아니하므로 상황에 따라 삭제 가능합니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수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수령자는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필요성에 대해 고지하고, 해당 비밀정보가 비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1.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하에 비밀정보의 사용 및 공개권한을 획득한 정보
 - 2. 법원 또는 정부기관의 명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단, 수령자는 즉시, 비밀정보 제공 전 제공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 통지하고,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상대방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 제4조 내지 제6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해지 여부와 불문하고, 본 계약상의 비밀정보가 "갑" 또는 "을"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해설 비밀정보의 보관, 공개금지 등의 의무는 공지될 때까지 보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비밀유지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귀사가 제공받는 정보가 더 많을 경우라면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량정보·파생정보의 사용허락 및 권리 귀속)

- ① 수령자가, 제공받은 비밀정보에 기하여 개량정보·파생정보를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 수령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위 개량정보·파생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수령자는 개량정보·파생정보를 대상정보의 관리에 준하는 정도로 관리 하여야 한다.
- ③ 수령자는 개량정보·파생정보를 논문게재, 홍보, 사용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제공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공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수령자가 개량정보·파생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 위하거나 제공하려 할 경우에는 제공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수령자가 개발한 개량정보·파생정보의 귀속 및 사용 허락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9조 (보증)

- ①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자신이 해당 정보의 적법한 보유자이거나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보증한다.
- ② 수령자는 본 계약에 의해 허용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대외무역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상의 규제를 준수할 것을 보증한다.

제10조 (권리유보)

- ① 본 계약 체결 전에 "갑"과 "을"이 비밀정보에 관하여 소유하고 있던 지적재산권은 원래의 당사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며, 상대방에게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허여 또는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공자에게 수령자와 후속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제공자가 제3자와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자료 등의 반환)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수령자는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원본, 복사본 기타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서류와 자료(전자 문서 기타 전자적 형태로 정보저장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저장 또는 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함) 및 이를 기초로 하여 가공 또는 획득한 제반 정보를 제공자에게 반납하거나,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파기한다. 이때, 파기내역을 작성하여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자료의 반환 조항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기업이미지 또는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갑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3조 (양도금지)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한다.

제14조 (계약의 종료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제1조에서의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거나 중도에

포기하기로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종료된다.

- ②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이행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서면 통보 후 7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 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기간 만료로서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및 공매 등의 신청을 받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 2.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해산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회생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된 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어 더 이상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 3. 조세공과금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경우
- 4.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허가취소, 고발 등으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자진폐업, 휴업하는 경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 5. 자신이 발행 또는 인수하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제3자의 명의로 발행하고 자신이 보증 또는 배서한 어음수표의 부도의 경우
- 6.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 7.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 경우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비밀정보수령자는 즉시 본 계약 제11조상의 "자료 등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⑤ 계약의 종료 및 해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본 사업의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유지의무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계약의 해지는 오히려 비밀 보호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일부로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의 효력은 존속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제15조 (신의성실 및 해석)

- ①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다.
- ②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제16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일차적으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산업기술과 관련된 것인 경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해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3조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은 민사조정법상의 조정과 유사한 제도로서 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조정위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지정되고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정보 유출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② 전 항에 의하여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갑" 또는 "을"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한다. 해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기재하여 놓았으나 관할법원은 분쟁을 대응할 귀사 소재지 관할법원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상대방의 관할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일한 계약서를 이용해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당사자들의 서면상의 합의만으로 변경·수정할 수 있으며, 그 변경·수정은 계약당사자들이 서명·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당사자 간의 구체적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인)			

(2) 비밀유지계약서(영문)

Confidentiality Agreement

THIS CONFIDENTIALITY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as of this [\square] day of [month], [year] (the "Effective Date") by and between ______Co., Ltd. (hereinafter "company"), a Korean corporation having a business address at ______ and [name of counter party], a [country of counterparty] corporation having a business address at [address of counterparty] (" \square "). The foregoing parties are also referred to as collectively as "Parties" and individually as a "Party."

WITNESSETH:

WHEREAS, company and _____ intend to [description of proposed cooperation project] (the "Proposed Cooperation Project");

WHEREAS, Confidential Information (as defined below) will need to be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during the course of negotiations and evaluation of the Proposed Cooperation Project; and

WHEREAS, both Parties desire to keep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confidential and protect it from unauthorized dissemination and use.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mutual promises, covenants and agreements contained herein and othe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of which is hereby acknowledged,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1. Definitions

- 1.1 The term "Affiliated Company" shall mean any company (i) directly or indirectly owned or controlled by any Party or (ii)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or controlling any Party or (iii) under the same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r control of any Party. Ownership or control shall exist through the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more than 50 % of the shares of a company or through the direct or indirect right by any other means entitling to elect the majority of the directors of a company or persons performing similar functions.
- 1.2 The term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whether conveyed orally or in printed or electronic format or in whatever other manner) disclosed by one Party to the other after the Effective Date, that (x) (a) is contained in or relates to any information memoranda, business proposals or other documentation relating to the Proposed Cooperation Project that may be prepared by a Party or on its behalf, or (b) relates to any financial, technical, business, operational, commercial, administrative, marketing, planning, staff, management and economic information, data and know-how of either Party, whether or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roposed Cooperation Project and (y) is marked as confidential with "비밀", "대외비", "confidential", "proprietary" or a similar expression or alternatively, if it is difficult to mark such information as confidential for some reason such as the fact that information is provided orally, then the said information shall be deemed to be confidential if the

disclosing party subsequently notifies the party receiving the information in writing that the said information is confidential information within fifteen (15) days from the date of disclosure by summarizing the said information in writing and marking it as confidential; provided, however, that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not include documentation, information, data or know-how which and to the extent:

- (i) is publicly known at the time of disclosure to the receiving Party or to one of its employees or professional advisors;
- (ii) becomes publicly known after such disclosure other than through an unauthorized disclosure by the receiving Party or one of its employees or professional advisors in breach of an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under this Agreement;
- (iii) lawfully comes into the possession of the receiving Party or one of its employees or professional advisors from a third party on a non-confidential basis as evidenced by the receiving Party, and as far as the receiving Party is aware is provided by such third party other than in breach of a confidentiality obligation owed by it to the other Party; or
- (iv) is developed independently by the receiving Party, without use of or reference to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as established by written evidence.

2. Us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Parties undertake, during the period applicable under Section 9:

- (a) to us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solely for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of the Proposed Cooperation Project, and
- (b) to keep and trea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strictly confidential, and not to disclo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except as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For the purpose of Sections 1 through 4 and Section 9 of this Agreement, the term "Party" shall include those "Affiliated Companies" of a Party (as defined hereinafter) which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structuring or negotiation of the Proposed Cooperation Project in accordance with Section 4 below.

The Parties shall cause such Affiliated Companies to comply with all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he term "Affiliated Company" shall mean any company (i) directly or indirectly owned or controlled by any Party or (ii)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or controlling any Party or (iii) under the same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r control of any Party. Ownership or control shall exist through the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f more than 50 % of the shares of a company or through the direct or indirect right by any other means entitling to elect the majority of the directors of a company or persons performing similar functions.

3. Disclosure by Law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no recipient of Confidential Information will be prevented, after giving written notice to the Party from which it received certain specified Confidential Information, from disclosing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 person or court if and to the extent required by law or to governments and government agencies pursuant to subpoenas and other discovery or inquiry procedures or pursuant to reporting requirements of such governments or government agencies; provided that such recipient will use reasonable efforts to have such person, court, governments or government agencies treat such information as confidential.

4.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Each Party may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only to those employees, Affiliated Companies and/or professional advisors who need to know such information for purposes of evaluating, structuring or negotiating the Proposed Cooperation Project, provided, however, that such employees, Affiliated Companies and/or professional advisors have assumed the sam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as the receiving Party under this Agreement.

5. Relationship of Parties

The Parties shall discuss and negotiate the Proposed Cooperation Project without being obliged to enter into further contractual or other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as constituting a binding legal obligation by the Parties to undertake the Proposed Cooperation Project.

6. No Right to Disclosed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grant each other no rights, in particular no ownership rights, licence, reproduction, replication, or reconstruction and usage rights or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r option rights in and to the disclosed information.

7. Return of Disclosed Information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afte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to return upon request any and all information received or to destroy any copies they may have made thereof.

8. Assignability; Successors and Assigns

This Agreement may not be assigned by any Part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d any such purported assignment, absent such written consent, shall be null and void and of no legal effect.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respective successors and assigns of the Parties.

9. Term of Agreement; Termination of Obligation

Unless extended by mutually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this Agreement shall expire [] months after the Effective Date.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obligations to hold Confidential Information in confidence shall expire [] years after its disclosure under this Agreement.

10. Notice

All notic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written in the English language and sent by facsimile or registered mail, addressed to the Party to whom the notice is given as follows:

```
if to company:
[ ]

if to ::
[ ]
```

provided that either Party may from time to time change the address to which notices to it are to be sent by giving written notice of such change to the other Party.

11. G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12. Dispute Resolution

In the event of any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the parties shall first try to settle such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in good faith through friendly consultation. If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is related to industrial technology, the Parties shall settle such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by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Resolution.

If and only if Parties fail to reach such settlement, then the dispute, controversy or claim shall be submitted to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f Korea.

13. Severability

Should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be or become invalid or unenforceable, such invalidity or unenforceability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14. Entire Agreement; Amendments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understanding between the Parties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expressed or implied, written or oral,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thereof. This Agreement may be modified only by written agreement signed by the Parties.

[signature page follows]

IN WITNESS WHEREOF, this Agreement has been signed by each of the Parties as of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Co., Ltd.			
Ву		_By		
Name:			Name:	
Title:			Title:	

(3) 비밀자료 제공·수령 확인서

비밀자료 제공·수령 확인서

주식호	회사(이하 "갑"이라고	¹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고 한다)는(은) 상호 간 <u>20</u>				
을은 갑으로부터 동			$1 \times 2 \times 10^{-9} \text{ M.T.}$	
글은 심으도구기 중	· 사도를 구성이었는	r글 확인합니다.		
명칭	문서번호	제공형태	비고	
	20			
"갑"				
_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인)				
"을:				
주식회	히지			
(주소)				
대표이사	(인)			



2024 기술유출 상담사례집

산업기술보호지원제도 ■ FAQ ■

- 1.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 2. 산업보안 교육
- 3. 국가핵심기술
- 4. 산업기술 확인제도
- 5. 기타



04

산업기술보호지원제도 FAQ



1.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

O1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가 무엇인가요?

A1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분쟁을 재판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O₂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2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5가지가 있습니다.

1. 신속성 : 조정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 및 조정

2. 전문성 : 법률·기술적 전문가 및 기술보호 담당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

3. 비밀성 : 조정 전체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

4. 경제성 : 조정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가능

5. 자율성 : 당사자 간 자발적인 참여와 타협, 화해, 양보를 통해 해결안 도출

Q3 조정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3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전·현직 직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부당한 인력탈취, 전직금 지, 기타 산업기술 관련 모든 분쟁

Q₄ 조정신청과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A4 조정신청은 조정신청서 및 피신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과 제출서류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배포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유선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분쟁조정제도 담당자: 02-3489-7033

Q₅ 조정신청 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A₅ 조정신청 시 부담금액은 정부수입인지 구매를 위한 1만원이 전부이며 그 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구매방법
 - 1. 오프라인 구매 : 가까운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 2. 온라인 구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후 원본 출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로그인] [납부정보 작성 용도 : 행정 수수료, 금액: 10.000원] [결제] [출력]
 - ※ 사이트 링크: https://www.e-revenuestamp.or.kr/

Q₆ 외국인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6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영문 또는 피신청인의 모국어로 번역한 조정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7 심판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A7 사전에 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는 조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에 의거하여 조정 중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송이 취하된 사건의 경우 언제든지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8 상대방이 조정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A8 조정제도의 특성상 상대방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Q9 조정신청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9 조정신청의 효력은 조정신청서 접수 즉시 발생합니다. 이때, 조정신청서 접수는 사무국에 조정신청서가 도달하여, 사무국 소속 직원이 조정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한 시점으로 봅니다.

Q₁₀ 조정 종결 후에는 제출한 서류가 반환되나요?

A₁₀ 분쟁조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은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년간 유지·보관됩니다.

O₁₁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 A₁₁ 분쟁조정위원회는 총 15인의 법률적, 기술적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위촉하고 있습니다.
 -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명 조건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Q₁₂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A12 네. 공정성 담보를 위해 법률 제25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가 가능합니다. 이는 위원 혹은 위원의 가족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등 심의·의결에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₁₃ 기술유출 징후 포착 시 어디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A13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는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비롯한 기술유출 대응 등 우리 기업의 자산 보호를 위한 모든 온·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해피콜센터 전화상담 : 02-3489-7000

해피콜센터 온라인상담: https://www.is-portal.net

2. 국가핵심기술

○1 국가핵심기술이란 무엇인가요?

A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의 일종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동법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별도 지정된 산업기술입니다.

O₂ 국가핵심기술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A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후 변경이나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3 네.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 범위 또는 내용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Q4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고, 인수합병 승인·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_4

구	분	승인	신고
수	民分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 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 아 개별한 기술로 해당 국기핵심기술을 수 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얻어야합니다.	대상기관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핵심 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 지 않고 개발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에게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인 <u>:</u> 합	•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 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개발 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지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Q5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인수합병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인수합병에 해당하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작성 후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하시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 관련 파일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6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A6 네.「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Q7 우리 기업의 보유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7 네. 국가핵심기술 여부판정제도가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부 판정신청서와 필요 서류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관련 파일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8 국가핵심기술 관리를 위해 참고할 자료가 있나요?

A8 정부와 소관부처에서 발표한 산업기술보호지침 또는 산업보안 안내서가 있습니다. 지침과 안내서는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산업기술 확인제도

Q1 산업기술이란 무엇인가요?

A1 산업기술이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재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O₂ 산업기술 확인제도란 무엇인가요?

- A2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의 보유기술이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 산업기술 확인대상 범위
 - 가.「산업기술보호법」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나.「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라.「전략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략기술
 - 마.「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바.「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Q₃ 산업기술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협회로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검토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산업 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산업기술로 확인되면 결과통보와 함께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 산업기술 확인제도 담당자 연락처 : 02-3489-7037

Q₄ 산업기술 확인은 누가해주나요?

A₄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확인 기술위원회가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Q_5 산업기술로 확인받으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₅ 산업기술이 침해·유출되었을 때 사후구제나 법적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_6 산업기술 확인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6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 산업기술 설명서, 확인신청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O7 산업기술로 확인 받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7 산업기술 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기술의 산업기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O₈ 산업기술 확인제도 신청 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A8 확인제도 신청 시 부담금액은 정부수입인지 구매를 위한 1만원이 전부이며 그 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구매방법
 - 1. 오프라인 구매 : 가까운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 2. 온라인 구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매 후 원본 출력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로그인] [납부정보 작성 용도 : 행정수수료, 금액: 10,000원] [결제] [출력]
 - ※ 사이트 링크: https://www.e-revenuestamp.or.kr/

Q9 산업기술로 확인받으면 확인서가 발급되나요?

A₉ 네. 산업기술임을 확인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Q₁₀ 산업기술 확인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A₁₀ 신청한 산업기술의 해당 법률이나 법률이 위임하는 명령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산업보안 교육

Q1 산업보안 교육은 무엇인가요?

A₁ 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최신 기술유출 피해사례 등을 통해 보 안인식 필요성과 보안수칙 준수 등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Q2 산업보안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2 산업보안 교육은 크게 방문교육,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방문교육은 전문강사가 교육신청 기업 및 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최신 산업 기술유출 사례 및 보안수칙 준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직급·시기 등에 따른 20분 내외의 맞춤형 동영상으로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₃ 방문교육과 온라인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3 방문교육의 경우 기업과 기관의 임직원이며, 온라인 교육은 산업보안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수강 가능합니다.

Q₄ 임직원들의 보안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있나요?

시4 네.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업보안인력 직무능력 향상 과정이 있습니다.이 교육은 국내 유일의 보안직무기반을 토대로 구성되어 보안관리에 필요한모든 직무에 대해서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5 교육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5 방문교육을 비롯한 산업보안인력 직무능력 향상 과정은 관련 홈페이지 혹은 유선을 통해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담당자 연락처: 02-3489-7028

Q₆ 교육내용과 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_6 매년 2월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is-portal.net

Q₇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A7 온라인교육과 산업보안인력 직무능력 향상 과정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교육 교육비는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교육 담당자 : 02-3489-7028

O₁₂ 교육 참여 시 수료증이 발급되나요?

A₁₂ 네. 교육에 참여하신 분에 한하여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5. 기타

Q₁ 기술보호와 관련된 다른 상담 기관도 있나요?

A1 네. 있습니다. 다른 상담 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원, 경찰청, 특허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등이 있습니다.



기술유출 상담사례집

본 사례집은 실제 있었던 기술유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받아 구성하였으나 일부 재구성되었으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보호 관련 서식은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니, 기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 속 모든 보안서식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행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문 의 : Tel. 02-3489-7033

E-mail. hijeong@kaits.or.kr

○ 법률자문 : 손태진 변호사 / 법무법인 선우

- 문 의 : Tel. 02-599-5900

E-mail. xocdi@naver.com

○ 법률자문 : 이찬이 변호사 / 법무법인 로백스

- 문 의 : Tel. 02-583-6300

E-mail. leeci@lawvax.co.kr





^{*} 본 사례집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제작하였으며, 사전 승인 없이 사례집 내용의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